

구술자료로 복원하는 강제연행의 역사

- 2001년도 구술자료수집결과 보고회 -

- ▣ 주 최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 ▣ 주 관 : 민족문제연구소/한일민족문제학회
- ▣ 후 원 : (국회연구단체)나라와문화를생각하는모임
독립기념관/(사)백범정신실천거레연합/한국마사회
-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 ▣ 일 시 : 2001년 12월 19일(수)
- ▣ 시 간 : 오후 2시-6시
- ▣ 연락처 : (02)969-0226(민족문제연구소/우수미019-328-5979)

심포지엄 순서

사회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 ◎ 격려사 김원웅(국회의원)
- ◎ 격려사 김호일(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 ◎ 제1발표 강제연행관련 구술자료수집의 현황 및 활용방안 -----5
 - 정혜경(한국국가기록연구원)
- ◎ 제2발표 국내지역 구술자료수집을 바탕으로 한 강제연행의 실태--22
 - 김인덕(국립중앙박물관)
 - 노영중(독립기념관)
 - 표영수(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 제3발표 일본지역 실태보고 -----40
 - 김정미(靑州 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 회장, 재일사학자)
- ◎ 제4발표 일본제철보상재판과 구술자료 -----47
 - 김은식(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 종합토론 토론자
 - 남신동(서울대학교 한국교육사교)
 - 강정숙(한국정신대연구소)
 - 신주백(역사문제연구소)

구술자료수집

(소수민족문화진흥)총서 제 1권 : 제 1권

(영남도)영남도	시서 ㉔
(경상북도)경상북도	시서 ㉔
(경상남도)경상남도	표본 ㉔
(충청북도)충청북도	표본 ㉔
(충청남도)충청남도	표본 ㉔
(전라북도)전라북도	표본 ㉔
(전라남도)전라남도	표본 ㉔
(제주도)제주도	표본 ㉔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표본 ㉔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표본 ㉔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표본 ㉔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표본 ㉔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표본 ㉔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표본 ㉔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표본 ㉔
(경기도)경기도	표본 ㉔
(충청남도)충청남도	표본 ㉔
(전라남도)전라남도	표본 ㉔
(제주도)제주도	표본 ㉔

일제하 강제연행관련 구술자료수집의 현황과 관리방안

鄭惠瓊(한국국가기록연구원)

■ 목 차 ■

1. 일제하 강제연행관련 구술자료수집의 필요성
2. 구술자료 수집의 현황
3. 구술자료관리 방안
4. 결론에 대신하여

1. 일제하 강제연행관련 구술자료수집의 필요성

1-1 구술자료란

구술자료란 '연구를 위해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로서 구술자(피면담자, 또는 話者)가 면담자(연구자)앞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억을 통해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을 통해 얻은 자료이다.1) 현재 구술자료의 활용도는 역사학은 물론이고 사회학, 언어학, 정신분석학, 심리학 등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역사적 가치라는 점에서 보면, 구술자료의 효용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구술자료란 사료로 이용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서술에 참여하여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 혹은 '역사의 민주화' 가능성을 열고 있다.2)

둘째, 문헌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 구술자료는 대체가 가능하다. 일제청산관련(강제동원 및 강제노동)이나 민주화운동보상, 양민학살관련, 국군유해조사사업 등에서 구술자료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피해자의 역사를 복원할 경우에 감히 구술자료의 가치는 절대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강제연행이나 일본군위안부, 양민학살의 역사에서도, 그리고 유대인의 학살역사에서도

1) 구술자료는 구술증언(oral testimony : 한 개인이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과 구술 생애사(oral life history :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 그 안에는 특정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증언도 포함될 수 있음)로 구분된다. 윤택림, 「구술자료의 해석과 텍스트화」, 『99한국문화인류학회 제6차 워크샵 발표요지』, 42쪽.
 2) 류방란, 「구술사 연구의 방법과 활용」, 『한국교육』25-2, 1998년, 47쪽.

언할 수 있다. 강제연행이나 일본군위안부, 양민학살의 역사에서도, 그리고 유대인의 학살역사에서도 가해를 입증할 문서자료는 확보하기 어렵다. 패전에 임박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폐기 처분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이다. 더구나 가해자가 이를 입증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증거를 말살하거나 가해자가 완전히 침묵해버리면 범죄인멸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증언만이 역사자료로 남아 있게 된다.³⁾

그러나 국내에서 구술사 및 구술자료에 대한 관심은 미비한 편이어서 인류학의 방법론으로서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 특히 문헌자료의 비중이 강한 역사학계에서 구술자료는 자료적 한계가 부각되는 제한성을 갖는 자료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구술자료 및 구술사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수년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와 한국교육사고에서 구술사 연구 및 구술자료수집작업을 이끌어 온 김기석은 「구술사 :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제12회 집담회 발표문, 1998년 7월 22일)에서 서구의 구술사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구술사 분야의 자리매김을 시도하고자 했다. 한국문화인류학회는 1999년 12월에 개최한 제6회 워크숍 '한국문화연구의 방법론 모색 - 구술사적 접근을 중심으로'에서 생애사, 일상사, 여성사 등 관련연구와 구술사적 방법에 관한 연구를 시도했다. 최근에는 기록학의 측면에서 구술자료를 문헌자료와 동등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연구 및 향토사와 접맥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⁴⁾ 또한 구술자료를 근현대사료에서 수집대상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⁵⁾ 이 가운데서 정혜경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구술자료의 성격이나 필요성, 효용성, 자료적 가치 및 해석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구술자료가 객관성을 담지한 자료인가', '왜 구술자료를 수집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수집과 관리방안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물론 구술자료는 문헌자료와 마찬가지로 자료적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구자들에게 자료의 가치와 객관성, 효용성에 대한 고민은 절대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의 역사와 문화는 좀 더 정확하고도 풍부하게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연구자들이 충분하게 고민하고 깊은 사색에 빠질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는다. 연구자들이 구술자료의 효용성과 객관성에 대해 고민하고 논쟁하는 사이에 우리 역사와 문화를 증언할 주인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흔히 바로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면담 일정을 잡아 놓고 幽明을 달리하거나 병세가 위독해져서 증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경험한다. 정치 일정에 따라 북으로 돌아간 장기수들에게서도 당분간은 증언을 들을 수 없다. 그 뿐이 아

3) 법리적으로도 범죄증거책임 입증하기 위해 약자구제라는 성격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예가 있다. 일본의 공해방지법은 피해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책임은 피해자입장에서 가해기업의 반증책임으로 전환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당한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가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법리를 반전한 것이다. 우에노 치즈코 지음,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년, 162쪽. 일본군위안부나 강제연행, 유대인학살사건 등에서 약자구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정혜경, 「한국의 구술자료관리현황」, 한국역사연구회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심포지엄 '한국역사기록의 관리와 발전방안', 2000년 10월 ; 정혜경, 「구술자료와 향토사」, 광주·전남문화정책개발센터 제3회 학술대회 '향토사자료의 보존과 지방기록관 설치', 2001년 6월.

5) 정용욱, 「개인사에 반영된 해방과 분단」,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선인출판사, 2001년 ; 유철인, 「구술된 기억으로서의 증언체류와 해석」, 『근현대사료의 이해와 수집·활용방안』(제20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회의 발표요지), 2001년, 6월.

니다. 어느 사이 하나 하나 쌓이기 시작한 녹음 테이프들이 연구기관의 서고나 책상 서랍에서 텅굴고 있기도 하다. 어렵게 수집한 자료들이 재생이 어렵게 방치되거나 녹취문이 준비되지 않아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언제까지 탁상공론을 할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최근에 몇몇 연구기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국가보훈처)에서 구술자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연구과제를 발주하고 있다. 본고는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조사연구실'이 지난 200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일제하 강제연행관련자 구술자료수집작업을 계기로, 강제연행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구술자료수집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시론적 성격을 갖는다.

1-2 구술자료를 통해 복원하는 강제연행의 역사

현재 한일간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연행 희생자에 대한 구술자료수집작업의 필요성과 의미는 더욱 높다고 여겨진다. 문헌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史實을 밝히고 아울러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헌자료의 공개를 촉진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함은 물론이다. 강제연행 역사의 복원에서 구술자료가 갖는 필요성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술자료는 피해자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구술자료수집을 통해 일제시대에 있었던 강제연행의 역사도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술자료수집의 시급성이다. 현재 생존한 피해자들이 연만하고, 사망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시기를 놓치면 구술자료 수집 가능성이 희박하게 된다.

셋째, 구술자료의 효용성으로는 연구 활성화와 강제연행을 비롯한 한일간 식민지청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구술자료수집의 현황

2-1 국내 현황

국내의 구술자료수집은 연구자 개인의 수공업적인 작업에 의존도가 높으며, 구술자가 명망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활용범위도 문헌기록의 보조자료로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 구술자료수집활동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교육사고, 한국정신대연구소 등이다. 그 외 장기수를 대상으로 한 '현대사구술기록보존연구회'나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개인 연구자에 의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장기간 구비문학을 수집하여 『구비문학대계』로 발간함으로써 국문학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⁶⁾ 역사학 방면에서는 1997년부터 구술자료수집을 시작하여 1997년에 10건, 1998년에 5건, 1999년에 30건을 수집했다. 열람과 청취가 가능하지만 웹사이트 상에서는 청취할 수 없다.

6) 이들 녹음자료 가운데 60분용 녹음테이프 1500개는 현재 웹사이트상에서 MP3 플레이어로 내려받아 청취할 수 있다.

국내외에 있는 한국교육관련기록들을 집성하고 기록에 기초하여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한국교육사고는 1991년부터 장기수를 비롯한 한국현대사의 산증인들로부터 구술자료를 수집한 결과 1000여 개에 달하는 녹음테이프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⁷⁾ 그 외 2001년 11월 1일에 개관한 한국미술기록보존소도 구술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장기수와 관련자(80여명)를 대상으로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현대사구술기록보존연구회를 위한 후원모임은 1999년 7월부터 한홍구·한모니카·김귀옥·김진환 등 몇몇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술자료수집을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몇몇 연구자들이 주제에 따라 개인적으로 수집작업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지역의 연구단체에서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있다.⁸⁾ 한국교육사고나 기타 개인 연구자가 수집한 성과물의 경우, 실제적으로 활발한 공개나 활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⁹⁾

이 가운데 강제연행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구술자료수집작업은 한국정신대연구소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및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한국정신대연구소는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출신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구술자료를 100여건 이상 수집하여 웹사이트(truth.bora.net)에 올리고 일부는 증언집으로 출간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가 1997년에 수행한 구술자료수집작업 가운데에는 사할린 귀국 동포에 대한 자료와 강원도 평창지역의 강제연행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최근에는 한일민족문제학회(회장 : 김광열)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에서도 구술자료수집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1년 10월부터 충남 논산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면별로 탐방하면서 구술자를 찾아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작업이 진행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 16개 면 가운데서 1개 면이 완료되었고, 2개 면에 대해서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몇 기관의 수집과 관리 현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술자료가 수집단계에서 미비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구술자료수집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외 무리한 구술자료수집이 이루어지거나 수집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녹취문과 상세목록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요약문으로 대체한 녹취문도 많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분류체계가 미비하거나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기관에 따라 독자적인 분류를 하거나 도서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 번째는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보존장소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서고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7) 특히 한국교육사고를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는 현재 대학원 과정에 국내 유일의 구술사 강좌(담당교수 : 김기석)가 개설되어 있어서 구술사 연구 및 국내 구술자료수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강좌 수강생들은 한국교육사고가 수행하는 구술자료수집 및 자료집 발간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1년도에 '강제동원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추진위원회'가 수행한 구술자료수집 작업에도 강좌 수강생(김명진, 남신동, 이흥기, 이해정)이 참여하여 자원활동을 벌였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8) 현재 국무총리 직속 제주4.3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문서수집과 구술자료수집을 병행하고 있고, 순천에 있는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도 여순사건에 대한 구술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필자는 1995년에 강제연행노동자(전북 임실지역)에 대한 구술자료수집을 비롯하여, 1998년과 1999년에는 일본 미에(三重)현 소재 紀州광산 조선인노동자를 연구하는 '紀州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회장 김정미)과 함께 구술자료수집을 강원도 평창과 경북 안동 지역에서 실시한 바 있다.

9) 2001년 5월에 비전향장기수 김석형에 대한 구술자료집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요』(이향규 정리, 선인문화사)가 발간되어 활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관리상의 미비함은 공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열람자가 상세목록이나 기본목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소장자료의 내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테이프의 모든 내용을 들어보아야 한다. 그 보다 더한 어려움은, 공개가 허가된 자료의 경우에도 공개가 되는 비율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2001년도에 들어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와 국가보훈처가 구술자료수집을 연구과제로 발주하여 12월 현재, 결과물을 수합 중에 있다. 구술자료수집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기관과 국가기관의 관심은 향후 질 높은 구술자료의 수집과 연구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 외국의 현황

미국은 미국의 대공황시기에 연방정부는 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창작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는데, 이 시기에 흑인노예, 노동자, 소작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대한 구술기록이 수집되었다. 아울러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은 1920년대 도시사회학 연구에 구술기록을 이용(면접, 참여관찰, 문헌기록조사, 통계분석)했다. 이들은 구술기록이 범죄심리나 도시사회현상뿐만 아니라 장기지속적인 사회변화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1948년 Nevin이 컬럼비아 대학에서 미국 정치사의 핵심인 물에 대한 구술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을 통해 원주민 역사, 흑인사, 여성사, 소수민족사, 민권운동관련구술기록이 수집되었고,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구술사연구실(Oral History Research Office)¹⁰⁾ 창설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미국의 구술사 관련 연구소나 연구기관은 수백개에 이른다. 대학에서는 Indiana, Columbia, Connecticut 대학 등에 구술사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다. 제2차대전과 관련된 구술사를 연구하는 기관으로부터 미국이 개입된 세계 각지의 전쟁과 관련한 구술사를 연구하는 연구기관까지 운영되고 있다.¹¹⁾

이탈리아는 세계적 구술사가 Portelli가 보여주 듯 구술자료수집 및 구술사 연구에서 두드러진 국가이다. 반파쇼빨치산투쟁, 노동계급 사회운동, 공산당사 영역에서 구술기록수집 및 연구가 활발하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구술기록관을 갖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문헌자료가 중시되

10) 컬럼비아대학 부설 구술사연구실은 구술사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1948년 풀리처상을 받은 Alan Nevins가 설립했는데, 그는 미국에서 구술사분야를 개척한 인물이다. 이 연구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구술자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존재이유와 사명감을 갖고 있다. 컬럼비아대학 부설 구술사연구실은 전 세계연구자를 대상으로 구술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술사프로그램은 분야와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수행되어 전세계의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이용한다. 수집의 중점은 미국정치사와 문화사이지만 중국이나 알제르니아에 대한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구술사수집도 수행하고 있다. 대중예술, 사회활동, 사회복지, 기업에 관한 자료도 포함된다. 매년 평균 200건의 구술자료가 기증이나 자체수집에 의해 수집된다. 이들 구술자료는 긴 내용의 생애사 기록과 특별한 경험이나 주제에 관한 짧은 구술기록 등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1999년 현재 컬럼비아대학 부설 구술사연구실이 수행중인 사업은 자료수집활동과 출판활동이다. 구술사연구실이 소장한 자료는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다. 일정한 열람시간 내에 열람자는 연구실의 목록이나 RLIN에 올린 목록을 통해 자료검색을 하고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수집된 구술자료는 두 영역으로 목록화되어 있다. 생애사 기록과 주제별 구술기록이다. 구술자료는 열람이 가능한 것과 제한된 것이 있고, 문서화되지 않고 마이크로피치로 제작된 것이 있다. 녹취문 외에도 녹음테이프를 직접 듣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개가 허가된 테이프의 경우에 시청시설을 제공한다. 구술사연구실은 7000개 이상의 녹음테이프와 700,000매 이상의 녹취문을 소장하고 있다. (WWW.columbia.edu/cu/libraries/indiv/oral/).

11) 김기석·이향규, 앞의 글, 2쪽.

어 구술자료수집도 개인사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으며, ‘***민중사’ ‘나의 昭和史’ 등으로 발간되는 데 그치고 있다. 구미와 같이 구술사연구소나 구술자료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도 찾아보기 어렵다.¹²⁾

2-3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조사연구실' 주관 일제하 강제연행관련자 구술자료수집작업¹³⁾

2001년 6월에 들어서 '일제하강제동원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자와 시민사회운동단체가 모인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산하에 조사연구실을 두고 문헌자료와 구술자료에 대한 수집을 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가 발족하기 이전에 조사연구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준비를 진행하던 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로부터 연구비지원 제의를 받고 2001년 10월부터 2개월간 일제하 강제연행관련자 구술자료수집작업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민족문제학회와 역사문제연구소, 한국교육사교 소속 연구자들의 도움을 얻어 작업팀(팀장 : 정혜경, 면담자 : 김명진, 김인덕, 남신동, 우수미, 이병례, 이해정, 이흥기, 장신, 정혜경, 표영수, 실무 : 우수미)을 구성하게 되었다. 서울과 경기, 전남과 전북 지역을 작업대상지로 정하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기조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두 차례에 걸친 면담자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 까지 4개 지역에서 구술자료수집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총 52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2001년 12월 11일에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상설기구로서 조사연구실(실장 : 정혜경), 대외협력실(실장 : 양미강), 법률실(실장 : 장완익), 사무국(국장 : 김은식)이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구술자료조사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주목할만한 구술자료는 식민지 조선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몇몇 조선사연구자들(강덕상, 宮田節子 등)이 식민지에서 조선통치를 수행했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자료이다. 그러나 공개나 활용은 오랫동안 보류되어 왔다. 현재 학습원대학 우방협회·중앙일한협회 문고가 소장하고 있는 이 구술자료(338종)는 릴 테이프 상태로 보관중인데, 별도의 보존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일반 서고에 보관하고 있어서 재생이 불가능한 테이프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기록관리에서 필요한 구술자료에 대한 기본목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분류기준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공개를 꺼리는 문고 측의 입장으로 인해 녹취문도 작성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 녹취작업이 진행되어 2000년 3월에 『동양문화연구』2호의 별쇄본으로 『미공개자료 조선총독부관계자 녹음기록(1) - 15년전쟁하 조선통치』가 발간되었고, 그 후 두 번째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추후에도 연차적으로 녹음기록이 발간될 예정이다. 구술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녹취문이 작성되었으나 구술된 시점으로부터 너무 많은 시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13) 이 자료수집은 참여한 면담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면담자에 대한 연구비가 전혀 책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녹취문과 상세목록 작성 등 자료수집과 관련된 모든 의무만이 부여되었다. 짧은 수집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일정이 강행되었고, 열악한 조건 아래에서 지방 출장을 해야 하는 등 예상 이상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특히 이번 구술자료수집을 기회로 구술자들에게 금품을 징수하는 지방 단체 종사자들의 모습은 면담자의 의욕을 상쇄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러한 일들이 자료의 질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해방 50년이 넘는 현재도 강제연행의 역사가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음을 실감한 기회였다. 면담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국내 구술자료수집상황을 개선하고, '강제연행의 역사'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3. 구술자료 관리방안

3-1 구술자료의 특성

구술자료는 자료가 생산되는 과정이 문헌자료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구술자료수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의 특징을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술자료의 특성은 구술자료수집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첫째, 구술성. 구술자료를 다른 자료와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은 구술이라는 점이다. 구술의 특징은 口語라는 점인데, 구어이므로 구술은 생산되는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구술은 구술자 개인의 언어 행위의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헌에 기록되기 힘든 구술에 동반되는 제스처와 얼굴의 표정, 음성의 고저와 떨림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구술은 매우 상황적이기 때문에 면담자에 대한 친화감(rapport)과 구술자가 갖는 목적의식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구술이 누구에게, 언제,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생산되는가 하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을 한다. 따라서 구술성의 포착은 구술자의 언어 자체와 언어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재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구술성이라는 특성은 기억력의 정확성과 연관되면서 자칫 구술자료의 한계로 자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억에 대한 정확성을 생각해보자. 인간의 기억은 선별적이고 시간에 따라 쇠퇴한다. 그러나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한 기억은 시간과 독립적이다. 관심의 정도에 따라 기억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생생하다. 실제로 구술자료수집을 해보면, 구술기록의 정확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주제, 즉 구술자가 인생의 경험에서 충격을 받았거나 깊은 인상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매우 높다. '평생을 잊지 못할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술자의 기억에만 의존하고 면담자의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다. 면담자는 구술자가 정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사전에 문헌자료를 충실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관성과 개인성. 구술자료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회상을 통해 현재로 불러내는 작업이므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기록의 주관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점도 구술자의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서 '기억의 주관성'이나 '선택적 기억'에 대한 우려가 자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술자는 사건을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상태로, 그리고 감정을 부여한 상태로 구술한다. 따라서 구술자료에 임할 때에는 인간 기억력에 부여된 감정의 의미와 관련된 쟁점을 해명해야 한다.¹⁴⁾

14) 구술기록채록과정의 행위선택에서 감정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의식적 망각과 침묵이다. 상상을 초월한 억압적 경험을 당한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침묵하곤 한다. 이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심리적 방어기제 탓이다. 이러한 특정 사실을 망각하는 예는 가해자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태평양전쟁에 참전한 일본인 제향군인들의 조직인 창지회(싱가폴 창지지역에 설치된 포로수용소 관련자 모임)는 전쟁 후 50년이 지나도록 정규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나 포로수용소의 경험은 공유하지 않는다. 패전국 일본의 국민에게 전쟁에 대한 기억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따라서 그들은 침묵을 선택하거나 선택적으로 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이야기는 말한 이야기 만큼 중요하다. 간혹 구술채록과정에서 이 침묵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구술자들은 괴성을 지르거나 울음

아울러 중요한 것은 구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증언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기억된 과거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기억은 거짓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므로 그 기억은 의미 있는 것이다. 구술자가 믿고 있는 바 - 즉 그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실지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史實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바로 사료비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면담자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으나 구술자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 구술을 하는 경우에, 이를 자료적 가치가 없다고 간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면담자는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의 문화적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일 경우에 민중들이 일종의 검열을 실시하여 집단적 기억을 보존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¹⁵⁾ 이러한 경우에 구술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술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구술자료가 거짓된 기록은 아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시해야 하는 점은 구술자의 특정사건에 대한 기억은 사실이나 정보의 요소와 함께 그것에 부여한 의미나 감정의 요소가 병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감정은 이성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취한 행위의 결정요인이다. 아무리 거대한 변화, 소위 구조적 변화 과정 속에서도 개별 행위자의 행위선택에는 고통, 두려움, 공포, 무력감과 같은 정서가 작용한다. 그럼에도 시민혁명, 산업혁명, 국가형성, 노동운동 등과 같은 대규모 사회변화에 대한 역사서술에서는 다루는 대상의 추상화 수준 때문에 행위의 감정적 요소와 그 작동에 주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셋째, 공동작업. 연구자인 면담자와 연구대상이 되는 구술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구술자료가 생산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구술자료는 구술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면담자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임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구술자라고 하더라도 면담자에 따라 구술자료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구술이란 단순히 면담자의 질문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가 구술상황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해석해내면서 생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구술자는 단순한 연구대상이나 자료를 만들어내는 일방적인 존재가 아니다. 구술자는 바로 그 구술의 주체이고 해석자이다. 그러므로 구술자료는 구술자와 연구자의 공동작업이고, 성과물이다. 그러나 구술자가 구술의 주체가 되고 해석자가 되는 과정에는 면담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면담자의 구술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무관심·몰이해나 편견, 자료수집에 대한 과욕은 구술자에게 상처를 안겨준은 물론이고 자료수집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면담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구술자를 資料原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술자는 면담자의 연구 수단이 아니다. 이는 구술자료의 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면담자의 자세와 인식, 방법에 따라 수집되는 구술자료의 질이 달라짐은 물론이다. 구술자가 면담자에 대해 신뢰성을 갖을 때 구술내용은 정확성을 갖는다. 인간의 기억은 냉장고에 넣어둔 음료수를 꺼내어 먹듯이 그렇게 필요할 때마

을 터트린다. 그리고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일단 구술증언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참담한 과거 기억의 명에서 자유로워지기도 한다. 이 점에서 구술은 상처받은 자에게 일종의 '치료'이기도 하다. 김기석·이향규, 「구술사: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1998년 7월 22일, 제12회 현대사연구소 집담회 발표문, 9:11쪽.

15) 동일한 사건에 대해 지배층과 민중들의 이해가 달리 나오게 된다. 구체적인 예는 백승중,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역사 - '집단의 기억'으로서 민중의 역사」, 한국문화인류학회 제6차 워크샵 발표요지, 34-36면 참조.

다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면담자가 구술자를 연구의 수단으로만 여길 때, 신뢰성이나 친화감(rapport)이 형성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면담자는 구술자가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史實에 이르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구술자료는 이러한 세 가지 특성으로 인해 대표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역사연구나 다른 사회과학연구에서 사료적 가치를 상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여러 학문분야에서 구술자료가 차지하는 위치는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작업은 문헌자료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구술자료에 대해 가장 소원했던 역사학에서도 일상사를 위한 연구는 물론이고 심성사나 생애사, 생활사 연구에서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흔히 구술자료의 한계로 지적되는 점은 바로 구술자료의 성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한계는 문자로 '썩어진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구술자료의 한계가 아니라 역사자료가 갖는 한계인 것이다. 먼저, 망각이나 잘못된 기억은 문헌자료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남경학살은 없었다'는 것과 같이,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하는 正史는 일본 기록들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다.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다. 오늘날 손에 넣을 수 있는 문헌자료가 어떠한 '검열'을 거쳐 우리 손안에 남겨졌는가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¹⁶⁾ 선택적인 기억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예는 특히 문서자료가 멸실되고, 은폐된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인간의 범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 동안 역사는 문헌자료의 힘을 빌어 독일의 나치가 행한 유대인 학살이나 한국의 군대위안부, 그 외 많은 양민학살사건을 복원할 때,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

3-2 수집 방안

이와 같은 구술자료의 특성은 단지 한계로 간과해도 좋은 것인가. 그보다는 자료적 특성을 인정하고, 이를 감안한 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수집방법이다. 면담자는 구술자료를 수집하기에 앞서서 몇몇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면접 이전의 준비가 필요하고, 면접을 하는 과정과 면접 이후 자료정리과정에서도 요건이 필요하다. 준비 없는 구술자료수집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¹⁷⁾

▣ 강제연행관련 구술자료조사 방법

1) 면담자 교육 : 이론서 탐독과 실습이 병행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습을 거친 면담자들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16)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년, 171-172면.

17) 서구에서는 현지조사방법론과 같이 구술자료수집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마련되어 있어서 중고대학생들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연구자들도 녹음기 하나만을 믿고 구술자료수집작업에 임하는 형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구술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과 고민일 것이다. 비록 안내서를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담자가 수집작업에 임할 때 얼마나 올바른 자료수집을 할 것인가 고민한다면, 구술자가 구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질 높은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2) 기초연구

가) 문헌자료연구 : 인터뷰에 앞서 1,2차 문헌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기초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면접을 할 수 있다. 구술자료 수집에 앞서, 그 사건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들을 확인한다. 문헌기록들을 집성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일지를 작성한다.

나) 현지기초조사 실시(군청 방문 → 면사무소 방문 → 면 소재 노인회관 방문 → 리 소재 노인회장 방문 조사 → 구술자 방문)

3) 면접주제 목록 작성 : 연구자들이 논의를 통해 면접을 통해 알아내고 싶은 내용을 미리 질문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술자의 배경(가정 및 교육환경), 식민지 시기 교육경험, 해방 후 상황, 사건 당시의 활동 등을 큰 항목으로 하고, 각 항목에 세부 주제들을 정한다. 면접의 세부 주제들을 정하는 것은 인터뷰 전체 과정의 핵심을 잃지 않게 하고, 일관성 있는 인터뷰를 하도록 도와준다. 특히 각기 다른 연구자들이 다수의 구술자를 면접하는 프로젝트 형태의 작업에서는 전체 프로젝트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세부주제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은 인터뷰의 역동성을 해칠 수도 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주제목록은 계속적으로 수정된다.

▣ 예 : 질문지 내용

1. 인적사항

1-1 이름

1-2 출생지

1-3 현주소

1-4 나이

1-5 경제상황 : 농가소유관계, 부채관계

1-6 가족상황 : 결혼여부 포함

1-7 학력 : 서당, 보통학교 등

2. 강제연행관계

2-1 연행된 계기

2-2 연행된 시기 : 구체적인 일시가 아니라도 해도 연도나 계절을 파악

2-3 연행의 방법 : 모집, 판알선, 강제징용, 국내 징용 여부

2-4 연행 집결 장소 및 이동 과정 : 구체적인 이동수단(선박, 열차 등. 중간 집결지→최종 집결지),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2-5 연행되어 파견된 장소 : 지리적인 설명(주변 경관에 대한 설명, 숙소 위치 등)

3. 노동 및 생활상태

3-1 노동현장의 상황 : 임금의 정도, 노동시간, 휴일, 여가시간 활용, 임금지급 방법, 도주, 동료와의 관계, 작업자와의 관계(인신적인 구속, 구타 및 억압 상황), 작업반장, 書士 등의 역할

3-2 생활상태 : 숙소 상황, 식사내용

3-3 현지에서 일본인과의 관계 : 차별대우 상황, 전쟁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3-4 현지에서 일반재일조선인과의 관계 : 재일조선인의 생활, 강제연행자와의 관계

3-5 기타 : 도주한 경우, 지시에 따라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한 경우, 현지 징용에 재연행된 경우, 징병에 해당된 경우 등

4. 일제 말기의 상황

4-1 일제 말기의 시대적 상황(황민화 정책의 수행 정도, 생활상태, 애국반 운영)

4-2 시대에 관한 구술자의 인식 정도 : 전쟁에 대한 인식 등

5. 해방 이후 내용

5-1 귀환 직전의 상황

5-2 귀환 일시 및 과정

5-3 귀환 이후 정착 및 사회화 과정

5-4 귀환 이후의 보상

6. 강제연행 및 노동에 대한 인식

6-1 강제연행 및 노동에 대한 평가 및 인식

6-2 일본정부나 한국정부에 대한 바람

4) 예상 구술자 접촉 : 프로젝트 주관기관에서 예상 구술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한다. 편지에는 프로젝트의 주제, 목적, 필요한 시간,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주관기관을 소개한다. 편지와 동시에 전화로 연락하였으며, 구술자가 요청하는 경우, 예상 질문 등을 우송한다. 일정 기간(약 1주일)이 경과한 후에 구술 허락 여부를 확인한다.

5) 구술자 동의 : 경우에 따라서 구술자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막상 인터뷰를 부탁하면 거절당할 수 있다. 이것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구술자는 인터뷰의 시작 단계에서 늘 망설인다. 특히 자신의 생애에 대해 구술할 때 더욱 그러하다. 자신의 삶이 무슨 연구거리가 되겠느냐고 주춤거리고 거절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그러한 제안을 계기로 하여 그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싶어한다. 면담자는 구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범죄행위에 버금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면담자는 구술자의 삶의 경험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증언은 '말한 그대로' 기록된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 실지로 '말한 그대로' 기록에 남기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설득의 과정은 연구자에게도 의미가 있다. 설득과 결단의 과정을 통해 구술자 뿐만 아니라 연구자도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과 가치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다. 설득과정 없는 심층 인터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쉽게 응하지 않는 구술자는 그만큼 구술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술자가 일단 인터뷰가 시작된 다음에 보여주는 정성은 연구자의 기대 이상일 경우가 많다.

6) 구술자 예비접촉 : 가능하면, 연구자는 구술자와 사전에 예비접촉을 하는 것이 좋다. 이는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구술자의 기본적인 신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다. 구술자와 첫 대면에서는, 발표자의 소개와 연구과제를 설명하고, 구술자의 간단한 이력만을 확인한다. 예비접촉은

이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해야하는 어색함과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7) 인터뷰 일정 수립 : 구술자료수집은 연구자와 구술자의 공동의 프로젝트이므로, 인터뷰 시작 전에 전체 계획을 함께 세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결국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되면서 계획은 수정되지만, 시작단계에서의 계획은 연구자와 구술자 모두에게 그 일의 규모와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보다 진지하게 인터뷰를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한다. 큰 질문들과 대강의 일정을 확인하고, 인터뷰의 시간을 정한다. 사정이 허락하면, 인터뷰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연구자와 구술자가 모두 다음 인터뷰를 준비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필요장비 준비 :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익숙해지도록 연습한다. 녹음기는 음성 이외의 잡음을 제거하는 음성 전용 녹음기가 가장 좋다. 건전지가 약해졌을 때 불이 깜빡이는 배터리 전등이 있는 녹음기를 구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녹음기는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연습해 두어야 한다. 연구자들이 녹음기 조작에 서툴러서 실수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테이프는 현재까지 마그네틱 보통 크기 테이프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다. 녹음기 및 재생기가 모두 60분 테이프를 표준으로 하므로 테이프는 60분 길이의 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90분이나 120분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 녹음자료가 손상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인터뷰가 시작되면 건전지와 테이프는 반드시 필요량의 2배를 준비해 간다.

9) 시간, 장소 결정 : 인터뷰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한 번의 인터뷰는 2시간을 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운다. 2시간이 넘는 인터뷰는 연구자와 구술자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 식사 직후의 시간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술자료수집을 하면서 4-5시간을 넘는 것은 정확한 기억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8시간씩 구술자료를 수집하거나 야간 장면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녁 늦게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무엇을 위한 구술자료수집인가 하는 점을 망각한 예이다. 인터뷰 장소는 소음, 다른 사람의 방문 등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구술자의 집에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구술자의 집은 구술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회상을 돕는 여러 단서들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장소이다. 전화나 삐꾸기 시계 등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10) 구술자료수집¹⁸⁾

1차 면접 : 친화감 형성 및 인적사항 조사

2차 면접 :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관련 증언 청취

3차 면접 : 보완 증언 청취, 사진 촬영, 구술자료이용허가서

감사편지 및 사진 송부

18) 인터뷰 작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면담자 오리엔테이션 자료 참조.

11) 자료공개 허가서 작성 : 최종적인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구술자로부터 자료공개 허가서(release form)를 받아야 한다. 허가서에 서명을 받지 못하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인터뷰 전에 미리 자료공개 취지를 설명했다 하더라도, 구술자가 자료공개허가서에 서명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는 연구와 교육의 목적에 쓰인다는 것을 재차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조건을 달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구술자의 사망 후 공개하거나, 통일이후에 공개한다는 등). 구술자가 구술내용의 공개를 제한할 경우, 연구자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제한조건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 연구자의 윤리이자 책임문제이다.

12) 구술자료 정리 : 카세트 테이프 정리/ 면담일지의 작성 / 구술자 신상기록카드 작성/ 녹취문의 작성 / 상세목록 작성

구술자료수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인터뷰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성실한 연구자라면 적어도 준비되지 않은 인터뷰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그 중요성은 구술사가 데일 트릴레븐의 말로 압축된다.

“아무렇게나 한 인터뷰는 역사 기록에는 위험천만한 것이고, 기록관 아키비스트들에게는 고통이며, 연구자들에게는 민폐를 끼치는 것이다. 그러한 인터뷰는 무엇보다도 후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기억을 공유하고자 하는 구술자를 모욕하는 것이다.”¹⁹⁾

3. 구술자료 관리방안

구술자료는 수집 과정 속에서 일정한 오류와 한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가 하는 점은 수집작업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구술자료는 구술자 중심으로 생산되지만 수집된 기록을 활용하는 것은 바로 연구자의 몫이다. 관리는 영구보존을 위한 노력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1 영구보존 방법

카세트 테이프나 릴 테이프 상태의 녹음 자료를 CD로 복사해 놓든지 수집단계에서부터 MD를 이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같이 오디오테이프를 Digitilizing 후 Filtering하여 음질을 복원하는 과정을 거친 후 WAV(저장용) MP3(웹서비스용)으로 구분하는 것도 좋은 예이다.

또한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보존장소가 요구된다. 특히 종이에 비해 기록매체의 보존성이 매우 취약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녹화테이프나 녹음테이프도 자성체가 도포되어 있어서 최적의 온도와 습도가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최적의 보존조건은 온도 15-27도, 습도 40-60%이다.²⁰⁾ 현재 기록법 시행규칙

19) Dale Treleven, "Oral History and the Archival Community: Common Concerns about Documenting Twentieth Century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History 10 (February 1989), p.53

20) 윤대현·지찬호, 「기록보존기술」, 『기록보존』7, 1994년, 185쪽.

에 명시된 보존과 장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

구 분		자기매체	필름매체
1. 시설	서고 면적	· 비디오 테이프 1천개당 14.2㎡ (5단 복식서가 기준)	· 사진·필름앨범 1천개당 38.4㎡(5단 복식서가 기준) · 영화필름 1천켄당 29.5㎡ (11단 복식서가 기준)
	고정식 서가	이동식 서가	고정식 면적의 40퍼센트
2. 장비	환경적응장비	구비	
	공기조화설비	항온·항습설비, 공기청정장치	
	자기온습도계	서고당 1대	
	소화설비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보안장치	폐쇄회로감시장치	
3. 온·습도 조건	온도(℃)	13~17℃	-2~2℃
	습도(%)	35~45% (변화율은 10% 이내)	25~35% (변화율은 10% 이내) 흑백 사진·필름, 마이크로필름은 자기매체 온·습도의 기준에 따른다.

비 고 : 시청각기록물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시청각기록물을 보존하는 전문관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3-2 검색도구

수집단계에서 녹음테입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녹취문과 상세목록이 작성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이들에 대한 기본목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기본목록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검색이 불가능함은 물론, 중복수집을 피할 수 없다. 문헌자료와 달리 구술자료는 중복 수집을 하였을 경우에 동일한 자료내용을 보장할 수 없다. 상세목록의 작성은 구술자료수집단계에서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술자료는 상세목록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는 수집단계에 치중하고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 결과이다.

* 상세목록의 예

1-A

1. 성장과정 : 익산군 망성면 어량리에서 출생, 충청남도 논산군 노성면 장구리에서 성장(양자)
2. 부친의 사망
3. 서당과 간이학교에서 수학
4. 中馬상점의 점원 생활

1-B

1. 조선무연탄주식회사(평양 소재) 견습생 시절
2. 이발소 근무 생활
3. 징병대상자가 되어 연성소에서 군사훈련
4. 일본제철 주식회사 大阪제철소에 응모

녹취문은 자료수집 직후에 작성하지 않으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시간이 경과한 녹음테입을 다시 틀어놓고 들었을 경우에 내용전달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을 것이다. 정확한 내용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구술자의 대부분이 노인이므로 전달도는 더욱 약해지게 된다.

* 1차 녹취문 작성시 유의점 : 사투리를 그대로 기재한다/ 말 줄임이나 당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함.

* 2차 녹취문 작성(검독)시 연구자의 역할 :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삽입/ 지문을 삽입/ 사실과 다른 구술내용에 대해서는 각주나 괄호를 이용해 정확한 정보를 기재/ 구술자의 구술 당시 상태를 알 수 있는 참고의 말을 기재

< 사례 1 >

구술자 : (*호적을 뒤적이며) 저는 이자,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면담자 : 아, 장성이요.

구술자 : 예, 여기다 바치세요>(*메모를 하는 면담자에게 찾상을 가리키며)

면담자 : 아니요. 제가 이거 딱딱한 거라서요. 괜찮습니다.

구술자 : 장성에서 태어나 가지고 좀 괜찮게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면담자 : 예, 그러면 예.

구술자 : 그래서 이제 그 농촌에서 한 중간 이상 가지요. 중간치 이상 가는 데서 태어나 가지고 어 그 전에 가. 아! 그전에는 이자, 소학교지요. 보통학교입니다. 보통학교 4학년때게, 4학년을 나와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나왔는데. 잡재기 집안이 기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광산을 해서.

: 아.

< 사례 2 >

구술자 : 그런데 너무 내 생활이 좀 참혹했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한번은 아버지께서 오시다가 내가 나무를 해 가지고 오는 거를 보고, 동지선달에 눈이 펄펄 날린 땐데

면담자 : 예.

구술자 : 그것도 비극 아니예요? 그런 얘기하자면... 그런 어린 것이 나무를 해 가지고, 손에 토시도 없이 손은 짝짝 터 가지구서

면담자 : 갈라지구

구술자 : 새까맣지 그러니까. 그런데 나무를 해 가지고, 땅에다 해 가지고 오는데 아버지가, 내 선친이 동상(*동생)의 집으로 내가 잘 있나 보러 오시던 길이지요. 그런데, 그 말하자면 개울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하난데 다리가 있어. 그래 이제 거기까지 와 가지고 내가 어깨가 아픈게 그래 나무를 내려놓고

서 있는 증인이다. 이제 아버님이 오시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 쪼그만한 것이 나무를 그렇게 해 가지고 가다보니까 앉아 있으니까 보니까, 자기 아들인데. 일싸안고 통곡을 하고 우시더라구. (* 눈시울을 적심. 잠시 구술 중단)

* 테입 표지를 이용한 기본목록 작성의 예

2001년도 강제연행관련 구술자료-박승철(2001.11.24) 1/2
분류번호 과 제 명 : 2001년도 강제연행관련구술자료 구 술 자 : 박승철(노무자) 면 담 자 : 정혜경 수집일시 : 2001.11.24 수집장소 : 역사문제연구소 총 분 량 : 2개(1/2) 자료상황 : 녹취문, 상세목록, 구술자 신상목록 주 관 자 : 강제동원진상규명피해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조사연구실

3-3 활용방안

대표적인 활용방안은 자료집 발간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활용을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자료집의 발간에 앞서 목록집, 초록집이 갖추어져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구술이용허가를 받은 자료의 경우에, 녹음테이프와 녹취문을 열람하도록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자료가 활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는 연구과제로 설정하여 연구자들이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자료수집의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심포지엄이나 보고회 등) 그 외 요약문에 CD를 첨부하여 녹음테이프 내용 전체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현재 구술자료는 자료집으로 발간되는 시점에서 운문이라는 가공을 거친다. 可讀性을 고려한 배려이다. 그러나 운문은 말 그대로 원문 자체를 갖고 닦는 것이다. 운문자가 구술내용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중요한 내용이 삭제될 수 있다. 그러한 예는 '구술사'의 전통이 오래된 외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²¹⁾

21) Studs Terkel은 구술자료를 이용해 많은 저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방법과 편집방법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그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면담을 했으므로 면담자의 편견과 선입관이 그 결과를 조종하도록 방

바람직한 자료집으로는 구술자료와 문헌자료가 함께 구성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구술자료내용에 대한 면담자의 주석이 필수적이다. 가능하다면 구술자료수집상황 당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주석이 필요하다. 『항일 혁명가의 회상』과 같이 구술내용에 대한 편집자의 해설비중을 높여서(30% 정도)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않은'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도 필요하다.

4. 결론에 대신하여 - 강제연행관련 구술자료수집 및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강제연행관련 구술자료수집은 연구자 개인의 수공업적인 노력에 의지해 왔다. 장기적인 계획 아래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강제연행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면담자가 1-2회의 기초교육만으로 작업에 '투입'되어 온 것도 현실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특정지역을 임의대로 선정하거나 작업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에 산재한 강제연행관련자에 대한 구술자료수집작업은 이제 '올바른 수집'이라는 과제와 함께 '시급성'이라는 과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작업이다. 이는 연구자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연구자 개인에게 역사적 사명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대한 작업이다. 기본적인 매뉴얼은 물론, 작업과 관련된 표준서식 조차 마련하지 않고, 연구비 지급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는 상황은 바로 구술자료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현실이기도 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몫은, 현실을 바탕으로 어떻게 강제연행관련자에 대한 구술자료수집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함과 동시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구술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연구사업이 발주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는 구술자료수집과 관련한 연구자의 고민이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1) 구술자료수집 : 장기계획에 따른 자료수집. 면담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정확한 수집. 수집방법에 대한 연구 및 협의를 통한 매뉴얼 개발. 교사나 연구자 등 지역이 중심이 된 자료수집.
- 2) 관리방안 : 분류와 記述 등 기록관리적 측면의 논의가 선행. 현재 각 연구기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개인이 수집한 자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 적정온도를 유지한 구술자료 관리(외국의 구술자료관 참조).
- 3) 연구 및 활용 : 외국의 구술자료관이나 자료수집기관과 연계 활동. 구술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마련(연구과제지원, 심포지엄 개최 등).

지했고, 녹취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문 부분을 삭제했으므로 질문이 상당히 중립적인 것 처럼 여겨졌다는 비난이다. 그래서 터켈은 위선자로 평가받아 'Terkelism'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얻게 되었다. 제임스 홉스, 유병용 옮김, 『증언사 입문』, 한울, 1995년, 22-23쪽. 또한 미국 하층 흑인여성들의 생활에 관한 구술기록집 『Women of Crisis』는 흑인여성의 증언을 문법적으로 정확한 "대학교육을 받은 백인여성의 언어"로 바꾸어 출간하였다. 그 결과 이 책은 생각있는 구술사자들로부터 '구술자의 생생한 삶의 현실로부터 언어를 빼앗아 기록을 박제화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기석·이향규, 앞의 글, 18쪽.

강제연행 실태 조사 연구

- 김인덕(국립중앙박물관)
- 노영중(독립기념관)
- 표영수(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 머리말

처참한 우리의 모습 그것도 우리의 역사이다. 강제연행은 바로 처참한 우리의 역사의 내용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으나, 잊으면 곤란할 역사, 그것이 강제연행의 역사일 것이다.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현재 '강제연행', '강제동원', '전시노무동원'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강제연행'은 朴慶植이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을 발표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이후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는 노무동원, 병력동원, 준병력동원, 여성동원을 포함한다.

강제연행²²⁾의 실태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본 발표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2600여명의 회원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들의 구술 내용을 토대로 해 정리했다. 현재 인터뷰가 진행되어 녹취자료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주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선행 정리에 토대 했다. 우선 노무동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²³⁾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인터뷰자료에 기초하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병력동원 관계는 별도의 최신 인터뷰 자료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 강제연행의 사례로 논산군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이미 국내에서도 지역단위 강제연행 관련 자료로는 창녕군의 사례²⁴⁾가 있다.

2. 노무동원 실태

1) 시기와 방식 대상

대체로 노무동원은 16-22세 정도의 청년들로 1943-45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들은 일본 전역으로 보내졌다.

동회장과 순사가 연행의 하부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다. 면사무소 노무계 직원은 동원하라는 지령을 이장이 받았고, 추첨을 하여 징용을 보내기도 했다.

어떤 경우는 영장도 없이 면서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지목하였으며, 지목당면 징용을 가게 되었다.

22) 김인덕, 「일본지역 강제연행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7), 1997. 12, 「한국에서의 강제연행과 강제연행 연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 관련 공청회자료집』 (2001. 4. 24).

23) 본고에서는 인터뷰 기록을 남기신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각주를 생략한다.

24) 「채인돌-태평양전쟁중 창녕군에서 강제연행당한 생존자증언집」 (강제연행생존자증언집편집위원회, 2000, 7).

어떤 경우는 영장도 없이 면서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지목하였으며, 지목당면 징용을 가게 되었다. 또한 주재소에서 연락이 왔고, 경찰서에 가 신체검사를 하고 징용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징용을 가지 않으면 가족까지 피해가 있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대규모의 징용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악대까지 동원한 거대한 환송식이 있었다.

특이한 강제연행의 경우로 대리로 간 사례도 있다. 1943년 3월경 마을 이장이 2장의 영장을 가지고 왔고, 사람들이 모여 추첨을 하였다. 아버지가 뽑혔으나 나이가 50세였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2년을 계약하고 아버지 대신 강제 징용을 당했다.

거리에서 강제 연행된 경우도 있었다. 한 예를 보면, 1942년경에 서울에서 혼자 어디가로 걸어가는데 두 명의 일본인이 와서 아무런 말도 없이 끌고 갔고, 끌려간 곳은 서울역이었으며, 서울역에는 끌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고 한다. 그리고 부산에서 일본으로 갔다는 것이다.

한편 신문광고를 보고 자진하여 돈을 벌기 위해 동원된 경우도 있었다. 1943년 9월초에 일본제철 오사카공장 공원모집의 신문광고를 보고, 일본제철은 자본금이 2억 엔인 큰 회사라는 것, 2년간 근무하면 기술자 자격을 딸 수 있고 조선에 돌아오면 당시 2곳에 있는 제철소에서 기술자로서 대우를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실려 있었고 여기에 응해 모집장소에서 일본제철의 모집담당자로 전직 육군중위, 전직 육군중사에게 면접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근로정신대의 연행은 보다 기만적인데, 일본인 담임선생님이 일본에 가면 공부도 시켜 주고, 돈도 벌고 대우가 아주 좋으니 일본에 가라고 설득을 하여 보내지기도 했다. 실제로 한 반에 약 30명중에 다섯 명 정도가 근로정신대로 선발되어 갔다고 한다. 특히 동생을 통하여 선생님이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그 선생님의 권유로 일본에 가기도 했다.

2) 연행장소 및 경로

일반적으로 강제연행될 때는 갑자기 되면서 가장 하부의 모집 단위에서는 국민학교나 면사무소에 집결했다. 그리고 신원확인을 한 다음 군, 시단위로 올라 갔다.

어떤 경우는 주재소 소속 일경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서 주재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열차에 실려 부산역에 도착한 경우도 있었다.

교통편을 이용하여 부산, 여수 등지로 이동해 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항구에서 1, 2박을 하고 배를 타고 일본의 시모노세키, 하카다 등지에 도착하였다. 숙박의 경우 여관, 여인숙에 집어넣어졌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초를 세웠다.

배는 주로 연락선, 화물선, 일본군 수송선 등이 사용되었다. 화물선의 경우 배에 한국에서 쌀을 싣고 간 쌀가마니 위에도 조선인들을 싣고 가기도 했다.

특히 이런 이동과정에서는 일본인 인솔자가 와서 데리고 가기도 했다. 주로 부산에서 노동동원의 경우 인계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다. 한 사례를 보면, 여수항에 도착하였고, 여수항에는 전라남도 전체에서 160여명이 집결하여 대형 화물선에 조선 징용자가 수천 명 타고 있었다. 九州 하카다 항에 도착하였다.

3) 노동조건

일본에 간 조선인들은 열차나 트럭 등을 통해 일본 전역에 보내졌는데, 주로 조선인 노동자의 경우 탄광, 건설현장, 군 시설 공사장 등지에 배치되었다.

대체로 노무동원의 경우 일과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8시 정도였다. 오전 6시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 후 작업장으로 이동해 갔다. 근무시간 관리는 관리자들이 철저하게 했다. 안타까웠던 일은 일본인 관리자보다는 조선인 관리자가 더 악독하게 행동했던 것이다.

현장에서는 일을 못하면 구타당했다. 회사의 감시원이 주로 구타를 하였다. 거의 모두 구타를 한번 썩은 당하였다고 생각된다. 일 못한다고 맞고, 도주하다 들켜서 돌아오면 어디론가 끌고 갔다. 우리는 어디로 끌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끌려가서는 몇 개월 감옥 같은 곳에서 살다가 회사로 돌아오기도 했다.

나고야 미쓰비시 현장에서는 각 지역별로 편성되어, 광주소대, 나주소대, 목포소대, 순천소대, 여주소대의 5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탄광에서는 일과시간이 끝나면 샤워를 하고 점호를 받고 취침에 들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탄광에서는 3교대로 일하였다. 채탄작업은 매일 8-12시간이었다. 작업량은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해야 했다. 탄이나 캐는 기계 같은 생활만 있을 뿐이었다. 탄광에 갔던 조선인 노동자는 현지에 도착하여 교육을 받았다. 갱내로 들어가 탄을 캐는 방법과 위험시 대피훈련을 받은 후에, 갱내 깊숙이 들어가는 방법과 굴속에서 탄을 캐는 방법을 배웠다. 구체적으로 채탄의 모습을 보면, 삽으로 탄을 퍼서 탄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펴고 잠시 기둥에 기대어 쉬다가 탄 캐는 작업을 하는 노무자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탄광에서는 작업을 할 때에는 옷은 전혀 입지 않았고, 팬티와 종아리에 형견을 대는 것이 작업복의 전부여서, 온 몸은 상처 투성이었다.

4) 기숙사

생활은 기숙사에서 했다. 1개방에 7~10명이 함께 생활을 하였다. 군사용 가건물, 바라크, 나가야, 함바 등지에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었다.

실제로 기숙사 시설은 매우 낙후되었으며, 쥐가 나타나 옆 사람의 바지 속으로 들어가 놀라기도 했다. 다다미 8조 정도의 크기의 방 하나에 6-12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였다. 특히 열자 방 한 칸에서 20명이 함께 생활하여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하기도 했다. 침구는 모기장, 이불이었다. 침구가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았다. 상황이 좋은 기숙사는 맨 처음 기숙사에 도착하자 회사 쪽에서 작업복과 신발을 지급되었다. 기숙사에서는 사감이 있어서 작업장까지 통제하였다.

당시 매일 매일 계속되는 공습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기숙사에서 나와 흩어져서 저마다 살길을 찾아 나서야 했다. 사람도 죽고, 말들도 죽고, 그 공습의 현장은 비극 그 자체였다. 공습이 지나고 간 다음날 아침에는 짐승과 사람의 시체로 펄비린내가 진동하였다.

노동현장의 생활은 자유가 전연 없었다. 자유시간은 일요일에 세탁시간 이외에는 자유시간은 없었다고 하겠다. 거의 외출은 금지되었으며, 한 달에 한번 정도 가능했으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공장에서 하루 하면 일당을 번다고 안나가는 사람도 많았다.

일이 많을 때에는 야근잔업이 있었고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적이 있었다. 휴일은 외출하는 일도 있었지만 외출시에는 반장, 소대장, 중대장 등이 감시의 의미에서 동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일본인이 조선인 노동자를 수준이 낮은 민족으로 취급했고, 일본어를 조금이라고 할 줄 알면 그나마 대접이 좋았다.

외출이라는 것은 없었고 모든 생활이 기숙사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회사의 외곽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

5) 식사

조선인 노동자는 절대 부족한 상태의 식사를 했다. 한마디로 말해 식사가 절대 부족하여 배고픔에 허덕였다.

주로 잠곡으로 된 식사를 해야 했다. 알랑미로 지은 밥의 경우 진기가 없어서 불면 날아갈 정도였고,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도 있었다.

아침 밥은 콩깨묵, 부식은 매실 두 개, 국물은 소금물에 바다풀 약간이었다. 특히 콩기름을 짜고 난 콩깨묵에 옥수수, 밀, 보리가 섞인 것도 만히 먹었다. 또한 아침식사 때에는 나무도시락에 점심을 싸주는 경우도 있었다. 식사는 현미밥이 주식이었으며, 수제비도 간혹 먹었다.

밥은 아주 조금씩 국 접시에 담아 줬으며, 변을 1주일에 1번 정도밖에 보지 못해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살이 빠진 경우가 많았다. 배가 많이 고팠기 때문에 주변의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주워 먹기도 하였다. 그리고 식사량이 적어 식사 후에 물을 먹고 배를 채우기도 하였다.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밥을 훔쳐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들키게 되면 회사 내 유치장에 가두었다. 물론 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사먹는 경우도 있었다.

식사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하여 배급하였다. 실제 식사를 직접 조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커다란 솥에다 밥을 해서 먹었으나, 보급이 두절되어 불가능하게 되기도 했다.

어떤 경우 식당은 상당히 컸으며, 약 1천 500명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도 한다. 식사의 양은 절대 부족하였으며, 일본인들이 배식을 하는데 저울에 달아서 밥을 나누어 주었다.

6) 임금

현지에서 임금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봉급은 임금내역만 기재된 빈 봉투였으며, 노무자들이 항의하자 귀국 시 전액을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월급을 받아도 금액이 매우 적었다. 대체로 회사에서 급료는 용돈정도만 지급되었다.

당시 노임은 월급은 다양했는데 20-80원 전후인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노동자의 숙련도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임금은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는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월급을 한번도 직접 받지 못했고, 담배 등 보급품을 받았다고 한다.

탄광 임금은 굴 안은 1일 7원 50전, 굴 밖은 3원50전~4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문제는 실제 임금을 받을 때 식사 값, 담배 값(하루에 8개비), 목욕비 등을 제하면,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돈이 2원~3원 정도였다.

7) 저항

노동현장에서는 회사 관계자들이 무단 이탈하여 도망하여 걸리면 엄벌에 처한다고 한다. 그러나 배도 고프고 일도 심하여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붙들려 왔고, 도주하다 붙들린 사람은 취조를 받고 구타를 당한 후에 구속당했다. 서신연락이 있었으나 자유는 없었다.

8) 귀국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하고 해방이 되었다. 대부분의 조선인 노동자와 군인, 군속은 기쁨으로 맞이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소화 천황으로부터 발표되자 대다수의 현장에서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배를 타고 귀국 길에 올랐다. 다수의 조선인 노동자는 귀국을 희망했다.

어떤 조선인 징용공들은 회사에 고향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회사에서 1945년 9월 배편을 마련해 주었고, 선박승선요금은 회사측에서 부담을 했다고 한다.

특징적인 경우로, 충남 사람들은 단체를 구성하고, 충남이라는 깃발을 만들어 반장을 구성했다. 그리고 11월에 九州 하카다항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왔다. 하카다에서 부산까지 12시간 걸려 도착하기로 선장과 약간의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던 사례로 있었다.

한편 1945년 8월 15일이 되었어도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도 알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1945년 8월 15일이 되었는데 달라진 것은 없었고 해방이 되고 나서 공장의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회사가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것이다.

배는 주로 군용선과 수송선, 미군 수송선 등을 이용했다. 물론 사선도 다수였다.

3. 병력동원 실태

1) 대강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와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점점 더 전선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물자와 인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조선인을 강제로 전장에 동원하였다. 조선인의 일제 군대로의 동원은 1931년부터 군속으로 동원된 것이 나타나며, 1937년 6월부터 조선인의 전쟁동원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38년 전시총동원체제로 들어가면서 본격화되었다. 1938년 2월 26일에는 「陸軍特別志願兵令」이 공포되고, 1943년에는 「海軍特別志願兵令」이, 그리고 1944년 8월 1일에는 「徵兵制」가 시행되었다. 또한 1944년 1월 20일에는 「朝鮮學徒特別志願兵」으로서 조선인 학생들을 지원이란 명목 하에 강제로 군대에 동원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제시기 군인·군속으로 일제의 전쟁수행에 동원된 조선인은 대략 37만명에 달하였다.

<표 1> 일제하 조선인 軍人·軍屬의 수²⁶⁾

25) 『舊陸海軍文書』 No.678, 別冊 二, 「朝鮮人志願兵制度ニ關スル意見」.

	계	사망 및 행방불명 (14%)	복원(86%)	비고
육군특별지원병	17,664명	2,473명	15,191명	육군군인 186,279명 해군군인 23,000명 육군군속 74,838명 해군군속 79,348명 계 363,465명 사망 및 행방불명 추정 14%(50,884명) 복원추정 86% (312,581명)
해군특별지원병	3,000명	420명	2,580명	
학도특별지원병	4,385명	614명	3,771명	
정병 1기(육군)	90,000명	12,600명	77,400명	
정병 1기(해군)	20,000명	2,800명	17,200명	
정병 2기(육군)	74,230명	10,392명	63,838명	
군속(육군)	74,838명	10,477명	64,361명	
군속(해군)	79,348명	11,108명	68,240명	
계	363,465명	50,884명	312,581명	

2001년도 11월부터 독립기념관의 지원으로 '강제동원특별법추진위원회'에서 구술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군인관련 체험을 가지고 있는 김행진, 정기영, 이병주 3명의 구술자료를 통하여 일제말기 군인관련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례

<사례 1>

구술자 - 김행진(金幸珍)²⁷⁾

본 적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40번지

출 생 - 1922년 6월 8일(만79세)

학 력 - 영암 공립보통학교 졸업. 히로시마 현립 남자중학교 2년 수학. 동경도 법정전문학교 1년 수학. 해화전문학교 6개월 재학 중 지원병으로 징집.

김행진씨는 1940년 해화전문학교에 재학 중 순사 입회하의 추천에 의하여 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일본 군인이 되었다. 그런데 지원병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해화전문학교에 4명의 지원병이 배정된 상태에 있었으며 이에 선발될 경우에는 대단한 영예라고 하면서 지원을 독려했다 한다.

처음 들어간 곳은 용산 육군 제23연대로 이곳에서 6개월간의 훈련을 받았다. 이때 용산 육군 제23연대에는 조선인 지원병으로 200여 명과 일본인 200여 명이 함께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친 후 조선인 가운데 30명이 복지 야전대로 배정받고 일단 귀가하였다. 그 후 4개월만에 정식으로 소집영장이 발급되어 다시 용산 육군 제23연대에 들어가 부산으로 집결하여 2개월간의 훈련을 받고, 다시 부산 적도 고사포진지에서 3개월간의 훈련을 거친 후 남양군도 방면으로 향하였다.

부산에서 출발할 당시 수송선으로 화물선 5척에 나눠 탔는데 이때의 화물선은 1척이 4~5천톤급이었으며 5층으로 이루어져 대략 6,000여 명이 탈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조선인이 4,000여 명 정도가 각

26)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 관련 공청회」(2001. 4. 24.) 자료.

27) 현 太平洋戰爭被害者 補償推進協議會 理事.

각 승선하였다 한다. 5척의 화물선은 일본 사세보군항에서 다른 선박들과 합류하여 총 11척이 남양군도 방면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필리핀 부근에서부터 미군기의 폭격과 잠수함의 공격으로 잠시 필리핀에 귀항을 하였다가 라바우르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후 뉴기니아를 거쳐 부잉지구에서 군생활을 하였는데, 부잉지구에는 간이비행장이 있었으며 바로 미군과 대치하고 있었던 섬으로 매우 치열한 격전지이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총 3만여 명이 상륙을 시도하였으나 전쟁이 끝난 후 살아 나온 사람은 조선인 11명을 포함하여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곳에는 조선인 군속이 약 5,000여 명이 있었고 일본군위안부는 없었다고 한다. 고립된 섬이었으므로 일본의 패전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으나, 결국 미군에 의해 1946년 3월 31일에서야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녹취문>

: 네. 마지막으로요. 그 일본, 일제시대 때 이렇게 고생한 걸 그 쪽 생각해보면, 어떤 감정이...
 아이! 꿈만 같으죠
 : 꿈만 같으세요.
 꿈만 같으지요. 내가 그 당시 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끼어요. 깨요.
 : 예
 그래서 이제 그 때가 언제서부터 그런가 하든, 환갑 지나고 나서
 : 네
 그 전에는 어땠더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환갑 지나고 나면서 그 죽은 아이들, 죽기 전에 “야 나 좀 살려다오. 너, 야 너 나하구 너 전우 아니냐 나 좀 살려다오”. 그 얘기가 그냥 귀에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또 그 아까 그 지복만이란 아이는 참 나하고 가차왔든데. 거 뭐 몸부림치구 그 이 움에다가 갖다가 죽지를 않는 거 갖다가 그 여기서 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기 전에는 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죽지도 않는 그 친구 갖다가 거기다 내 던져놓고 말이지. 그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술도 먹고 그래요. 가끔가다 그 그냥 아주 참 꿈이 아니냐. 진짜 아주 어떨 때는 막 몸부림쳐지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또 살았냐. 이게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저저하냐 하는 그런 생각, 나 많이 하지.
 : 혹시 한국정부나 일본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정부에는 내가 일본정부 놈들은 뭐 저저하지만 이 한국정부한테 꼭 하고 싶어요. 그 65년도 김종필이가 가서 오히라하구 그, 그랬다는 그것을 초월해서 자기 부모가 만약에 내 꼴이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많거든. 이 소식을 모르구 있는 사람들두 허다하게 많아요. 그 사람이 자기 부모가 그런 사람이 있대구 가정을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무관심하고 내, 내동맹이 치겠냐. 이거지. 왜 너무 지금 우리 한국정부관리들이 너무 이게 관심을 안 쏟아주구. 진짜 야스쿠니 신사에 살아있는 나두 지금 거기 내 더듬지 않아서 그랬지만, 전사통지 두 번 왔길래 틀림없이 그 안에두 내 명단도 있으리라 나 생각하지만 찾고싶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은 하다 거기 가서 머 내가 그럴 저것도 없. 없. 고, 죽지도 않은 사람 야스쿠니 신사에 죽은 걸로 지금 다 저희들이 뭐 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밝힐 것, 밝혀줘야. 우리 정부 지도자들이 나봤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았지만은. 그거는 지나간 옛적이라 하더라도 이제 살아남은 정부의 현재 집행부들이 그런 것을 나서서 떠들어 줘야 된다 이거야. 우리 같이 힘없는 놈들이 나서서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이제 새삼스럽게 뒤늦게 하지만은 이기 우리 힘 가지고 못해요. 정부가 이거 앞장 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저 뭐야 일본에 내가 후생성에 갔더니 거기 있는 관리가 “혹시 김종필씨하고 가서 만나서 얘기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런 얘기가. 일본말로. 아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나하고 얘기할 리가 있냐 말이야. 그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얘기도 내 해보지 않. 그 그러니깐 그 때에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다 해 줬는데, 하는 염두를 두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또 일본정부한테 얘길 한다면, 우리를 데리고 갈 때에는 일본천황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세끼시. 빨간 자식이라는 건

: 赤子.

일본천황의 자식이라. 적자

: 예

그렇게 해서 데려가서 생명을 다 뺏아가 놓고 지금 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망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짓밟고 있단다면,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도 잊어버리지만, 현재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자나라가 됐지 않냐 이 말이야. 어떤 그 근간은 우리들이 그래도 그런 기초가 돼 줬길래 미군인들이 와서 자기네 그렇게 키워줬지. 그러면 자기네 나라의 일본인들은 연금도 주고, 보상도 다 해요. 지금 연금은 주고 있다구. 나한테 편지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왜 제3국인이라 해 가지고 한국사람들은 이래 모른 척 하나 이거야. 아 저 놈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주겠어. 뭐 말 들으니까 대만 뭐 여 2백, 2백만, 만원 주구 우짜구, 우리 한국사람두 뭐 4백만원 주구 뭐 이제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는 진짜 우리 때문에. 지금 천황이 없어졌으믄 모르지만, 천황이 있는데, 우리 때문에 니그들이 생명을 이렇게 버리구 느이 인생을 다 버렸는데, 이런 정도로 마음에 안차겠지만은 우리가 보상을 이런 정도로 위안을 해서 보상을 해주마. 그리고 적어도 성의는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일본놈들이. 더군다나 이기 그 전에 저 이 그 금방, 내 이름, 저 지금 지금 그 총리는 미안하다. 그 사람이 안 죽었더라면은 어떤 결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고이즈미 준이찌로는 지금 모르지. 이대로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소송결과가 어뜨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의가, 너무 일본놈들은 없는 거예요. 이놈들하구 앞으로두 우리가 어뜨게 한일동맹 뭐 우짜고 어뜨게 하느냐 이거야. 하든 똑같으다 이거야. 앞으로도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 차려줘야지. 이건 우리는 기왕에 희생당한 사람들이야.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가 우리 나라 지키고 이렇게 할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정신 차려줘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사례 II>

구술자 : 정기영(鄭琪永)²⁸⁾ 1920년 1월 20일생(82세)

본 적 : 경상남도 진주군 상봉동 135

학 력 : 도요마고등학교 졸업. 東京帝國大學 東洋私學科 3학년 재학중 학도지원병으로 징집

28) 現 社團法人 日帝強制連行韓國生存者協會 副會長. 前 財團法人 釜山靈園 理事長.

정기영씨는 1944년 1월 21일 학도지원병으로 일제 군대에 징집당하였다. 당시 그는 동경제국대학에서 동양사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졸업논문을 쓰기 위해 서울에 와있는 동안에 어머니와 형님이 경찰서로 불려나가 지원을 중용당하였다고 한다. 동경제국대학에 학도병 해당자는 대학원과정까지 98명이었으나 그 중 학도병으로 끌려간 것은 1/3에 불과하였다.

처음 대구 80연대에 지원하였는데 이곳에는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에서 300명 정도의 조선인 학병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 대구 80연대에서 1주일이나 지나 중국 양자강을 건너 남경을 지나 소주에 도착하였다. 소주에 도착한 후 5개월정도 훈련을 받다가 간부후보생에 합격하여 다시 5개월의 훈련을 받고 46대대 5중대에 배속이 되었다. 이때 조선인 간부후보생으로는 300명이 함께 훈련을 받았다. 이후 다시 시험을 쳐서 1944년 11말경에 사관후보생이 되어 남경사관학교에서 조선인 120명의 사관후보생과 함께 훈련을 받고 1945년 6월 30일 졸업하였다. 이후 소주에 있던 13군사령부에서 일주일간 집합교육을 받은 후 항주의 133사단 608대대 제3소대장으로 배정되어 있다가 1945년 8월 14일날 관계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 소식을 듣고 133사단에 있던 조선인 500명을 인계받아 상해로 올라와 귀국운동을 벌였다. 처음에는 광복군 소속으로 있었으나 미군정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광복군을 탈퇴한 후 귀국촉진회를 통하여 귀국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46년 3월 6일 상해에서 LSD 2대에 민간인 1,500명과 군인 1,500명이 타고 귀국하였다. 이때 민간인 1,500명 가운데에는 일본군위안부 200여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례 III>

구술자 : 이병주(李炳柱)²⁹⁾ 1925년 3월 20일생(77세)

본 적 : 평양 기림리 180

학 렳 : 기림보통학교 1회 졸업. 평양승인상업학교 졸업.

이병주씨는 만주국 경제부 산하 선만국경에 있는 도문이라는 국경도시에서 근무하던 중 1945년 8월 9일 갑종 합격자로 징집되어 소만국경도시인 하이라르에 있는 일본 육군 제362부대에 배치받았다. 그러나 부대에 도착하여 군복을 갈아입는 와중에 소련군이 진격해 들어옴으로 바로 후퇴를 거듭하여 홍안령의 사단본부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열악한 화력으로 소련군에 대응할 수 없게 되자 TNT 6개를 몸에 묶고 소련 탱크에 자폭하는 수단을 동원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때 상당히 많은 조선인 군인들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과 함께 무장해제를 당하고 찌찌하루에 포로로 수용되었다. 이후 소련점령군에 의하여 일본군포로서 소련 서부시베리아의 클라스노야르스크에 있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때 일본군 포로들은 1천명을 일개 작업대대로 하여 500개 수용소에 수용되어 전후복구사업에 동원되었다. 수용소에서는 아침에 350그램의 흑빵 한 조각과 점심에는 양배추 스프, 저녁에는 스프 혹은 죽을 주었는데 그날 작업량을 달성한 사

람에게는 아침에 50그램의 빵 한 조각을 더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포로 수감생활은 조선인과 일본군의 구분 없이 같은 막사에서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후 1946년 7, 8월경에 어느 정도 소련어가 익숙해지면서 수용소 소장과 접촉하여 포로신상명세서를 다시 작성토록 하여 조선인은 별도의 숙소를 제공받게 되었다. 1948년 9월경에 클라스노야르스크지역에 6개의 포로수용소에 있던 450명의 조선인 포로들이 한 곳에 수용되었고, 이후 하바로브스크에 있는 제4수용소로 옮겨졌는데 이곳에 모인 조선인 포로는 약 1,300여 명이나 되었다. 1948년 12월에는 브라디보스토크로 옮겨져 5천톤급 화물선을 타고 함경북도 홍남항으로 귀국하였다. 북한에 도착한 이들 포로들은 연고지별로 구분한 결과 북한이 800명 남한이 500명 정도였다. 이 가운데 남한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500명은 비공식적인 루트로 휴전선을 넘어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논산지역 강제연행 실태

1) 대강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산지역의 강제연행 실태에 대하여 구술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논산시는 충청남도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행정구역은 2읍(강경읍과 연무읍) 12면 2동 517리 2,539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산 지역은 北海道 지역에 집단으로 강제연행된 경험을 지니고 있고, 1944~45년에 강제연행을 거부하다가 국민징용령 위반으로 기소된 당사자들의 출신지이기도 하다. 기록상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北海道炭鐵汽船株式會社の 夕張・空知・新幌内광업소 등으로 연행된 강제연행자수는 1942년 2월 19일부터 1945년 8월 8일 사이 총 395명이다. 또한 『판결원본』으로 확인 가능한 국민징용령 위반으로 기소된 강제연행자는 총 32명이다.

우선 『いわゆる 강제연행자명부』(독립기념관 소장)와 『판결원본』을 중심으로 논산지역의 강제연행자 68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강제연행자명단을 각 면사무소에 보내 생사여부나 주소 확인에 협조를 받았고, 이후 각 지역 경로당과 노인회장, 해당 당사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3개면에서 총 71명의 강제연행자를 조사할 수 있었고, 이중 생존자 16명을 면담할 수 있었다. 조사된 71명중 일본 및 기타 국외로의 강제연행자는 68명, 국내로의 강제연행자는 3명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는 벌곡면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 강제연행의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2) 시기와 방식 및 대상

벌곡면에서의 강제연행은 1939년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장이나 면서기들의 강압적 권유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우가 있다. 1940년 2월경에 이장이 가라고 해서 강제로 모집에 응하여 같은 동네 3명과 함께 연행되었으며, 이때 논산 전체로는 약 130, 40명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면서기들이 강압적으로 권유하여 모집에 응하여 1939년 연행되었는데, 이때 벌곡면에서 모두 7명이 갔다고 한다.

29) 現 韓國 시베리아 朔風會 會長.

국내로 모집되어 탈출하다가 붙잡혀 그대로 일본으로 연행된 경우도 있었다. 김용석은 강제연행에 대해 9번이나 탈출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특히 결혼 후 1년도 안되어 황해도 흥능탄광에 연행되었는데, 이후 탈출하였다가 警防團에게 붙잡혀 그대로 일본으로 연행되었다. 황해도 지역의 모집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1942년 4월 관알선으로 간 경우도 있다. 전봉한은 공주 노무지도자 훈련소 6개월 과정을 마치고 충청남도 보국대장으로선 충남지역 알선 노무자 998명(1,000명을 모집하였으나 2명은 징병대상자로 제외됨)을 직접 인솔하여 갔다고 한다.

이전에 가 있던 사람의 소개로 모집에 응하기도 하였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이전에 가 있던 사람이 차비를 대줘 몇 명과 함께 갔다고 한다.

징병을 피하여 모집에 응하기도 하였다. 징병의 나이였으나 징병은 곧 죽음이라고 하여 아버지가 사망신고를 하였고,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나기까지 하였으나 모집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3) 연행 장소 및 경로

논산시 벌곡면의 강제연행지는 일본의 쿠슈(九州)와 이바라키(茨城)현이었다. 이들은 군청에 모여 집단적으로 연행되었다고 한다. 강제연행 경로는 논산에서 기차로 대전까지 오고, 여기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부산까지 이동하였다. 부산에서는 주로 關釜連絡船이 이용되어 시모노세키(下關)을 경유하여 쿠슈와 이바라키현으로 연행되었다고 한다.

강제연행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쿠슈지역은 사하(佐賀)현 신야시키광산, 고갱현탄광, 하카다(博多) 사사구리탄광이었고, 이바라키현 히다치(日立) 모터공장이었다.

일본지역 뿐만 아니라 국내지역으로도 연행되었다. 이때는 주로 기차를 이용하여 연행되었는데, 2-3일씩 걸렸다고 한다. 연행지를 보면, 함남 단천군 고성면 만덕리 구리광산, 함북 아오지탄광, 황해도 흥능탄광 등이었다.

4) 노동조건

이들이 주로 담당했던 일은 직접 탄을 캐거나 탄을 운반하는 일, 흙을 실어나르는 일 등이었다. 특히 이렇게 보국대장으로 관알선된 경우는 직접 일은 하지 않고 미군 포로감시원으로서 일했다고 한다.

노동조건은 그야말로 악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간은 보통 새벽 6시부터 저녁때까지 12시간 노동이 기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할당량을 지정하여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밤 늦게까지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적은 임금까지도 지급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출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국내연행의 경우도 구타는 일상적이었다고 한다. 사고나 병으로 죽은 경우 작업장 뒷산에 내다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라 개취급이었다고 한다.

작업장 환경도 대단히 열악하였다. 안전시설이 전무하여 작업중 바위가 떨어져 죽을 뻔 하기도 했고, 천장이 내려져서 다치기도 하였다. 또한 하꼬에 발가락을 다치기도 하였고(지금도 엄지발가락이 검지발가락 밑으로 휘어져 있었음), 구루마에 치어서 왼쪽 무릎을 다치기도 하였다(지금도 그때의 흉터가 있었음).

국내연행의 경우, 사고가 나서 다쳐도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오히려 다치는 것을 좋아하기까지 하였을 정도라고 한다. 심지어 함북 아오지탄광의 경우는 작업중 죽는 사람이 많아 관을 만드는 공장까지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5) 교육

강제로 연행된 조선인은 사업장에 도착한 이후 사전교육을 받았다. 7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작업장, 식당, 목욕탕 등 주위 환경에 대해 설명을 받았고, 위험시 대피훈련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탄 캐는 방법이나 기계 작동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으며 전기선 등을 조심하라는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런 교육없이 작업장에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6) 임금

임금은 사업장마다 달랐다. 월급은 작업량에 따라 50-100원까지 받기도 하였고, 일당 25전 혹은 50전, 70전~1원, 2원 50전을 받기도 하였으며, 숙달된 경우(6년제) 월급을 100원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내지역의 경우 보국대로 끌려간 경우는 월급이 7원이었고, 일의 양에 따라 20원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임금은 훨씬 적었다. 쉬는 날(일요일, 명절 등)이나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때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7) 거주조건

강제연행된 조선인은 생활 전반에서 철저히 통제되었다.

조선인은 주로 함바에서 생활하였다. 함바는 1층~4층 기숙사 건물로 한 함바에는 수백개의 다다미방이 깔려 있었다. 다다미방 하나에 7~10명이 생활하였고 심지어는 20명이 함께 생활한 경우도 있었으며, 불도 매지 않고 이불만 지급되었다고 한다. 특히 충남 출신의 998명은 4층 건물 중 3, 4층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국내지역으로 연행된 경우는 더욱 심하였다. 보국대원들은 함바가 없어 천막 속에서 생활하였는데, 4~5미터의 천막 안에서 30명 정도가 잠을 잤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작업장에서는 자유가 제한되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의 연속이었다. 작업장은 감옥처럼 울타리가 둘러 싸여져 있어 감옥속 죄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주위 70리를 형무소 담처럼 높게 쳐 놓아 넘어 오지도, 넘어 가지도 못하게 해 놨다고도 한다.

자유시간은 일요일 이외는 없었고 외출이나 휴가도 탈출의 염려가 없는 사람에게만 시켜주었다고 한다. 편지 왕래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 같다.

그러나 국내 연행의 경우는 편지는 물론 외출도 일체 없었다고 한다.

8) 음식

강제연행 조선인이 가장 참기 힘들었던 고통이 배고픔이었다. 질적인 면에서도 형편 없었지만 양적

인 면에서도 절대량이 부족했다.

주로 콩깻묵밥이었고 아침에는 국을 '먹는' 정도였는데, 그 양이 적어 점심 도시락을 싸주면 사업장에 도착하자마자 먹어 빈도시락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해야했다. 때문에 해를 보면 비실비실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 쌀밥이라고 해도 인도미로 배를 채우는 정도였고, 항상 배가 고파 얼마되지 않던 월급도 떡이나 술을 사먹는데 다 써 버렸다고 한다.

운 좋게 식사반장을 하여 배고픔을 겪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조선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국내 연행의 경우는 작업반장이 식사를 제공하고 임금에서 밥값을 제했다. 주로 강냉이밥에 미역국을 먹었다고 한다(때문에 지금은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고 함). 콩깻묵밥의 경우는 4/5가 콩깻묵이고 쌀이 1/5의 비율이었으며, 이것마저 없어 강냉이 삶은 것과 콩 삶은 것을 먹었다고 한다.

9) 저항

강제연행된 조선인은 연행되는 과정과 사업장 도착이후에 끊임없이 투쟁하였다. 투쟁방법은 탈출과 파업·태업 등의 집단행동이였다.

별곡면의 경우에도 탈출을 시도하여 성공하였다. 2년의 노동 후에 부근의 지리와 상황을 익힌 후 4명이 함께 탈출하여 성공하였다고 한다. 새벽 3시에 여자들을 시켜 표를 끊어 기차를 타고 나가사키(長崎) 조선소로 향했다고 한다. 나가사키 조선소에는 이미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다고 한다.

또한 조선내에서 강제연행에 저항하여 9번을 탈출한 경우도 있었다.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황해도 홍능탄광으로 연행되어 노동하던 중 다시 탈출하였다가 警防團에게 붙잡혀 그대로 일본으로 연행되기도 하였다.

충남지역 보국대장의 경우 반장 10명을 이끌고 도주자를 붙잡으로 간다고 하며 탈출하였고, 이후 다시 신사현에서 50명씩 2번 출정군인으로 위장시켜 조선인을 탈출시켰다고 한다.

고향에서 연락을 주어 귀국하고 그대로 고향에 남아있던 경우도 있었다. 6년 동안 일하면서 쌓은 신용과 함께 고향 면사무소로부터의 연락이 있었다고 한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 집에 편지를 하였고, 고향집에서 부모님이 위독하다고 거짓을 말하여 면사무소에서 연락을 해 주었다고 한다.

국내 연행의 경우에도 작업장에서의 탈출이 빈번했다고 한다. 탈출할 당시 전체 30명 중에 13명밖에 남아있지 않는 정도였다고 하고, 탈출하면 부근의 공사장에 취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탈출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근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 탈출하다 붙잡히면 죽도록 매를 맞았다고 한다.

10) 귀국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발표되고 해방이 되었다. 강제연행 조선인은 대부분 해방소식을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다고 한다. 해방이 되자 강제연행 조선인은 회사에게 귀국을 요구하였다. 회사에서 배를 마련해 주어 귀국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배까지 마련해 주지 않아 돈을 건어 배를 마련하여 귀국한 경

우가 많았다. 귀국할 때까지도 1인당 150~300원의 배삐를 자신들이 지불하였던 것이다. 특이하게 부산에서부터는 인솔자가 인솔한 경우도 있었다.

귀국할 때는 구주 하카다에서 부산이나 여수까지의 노선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항해중 배가 고장 나 일주일 동안 바다에 떠 있다가 간신히 도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해방이 되기 전에 귀국한 경우도 있었다. 6년 동안이나 있어 회사의 신용을 얻은 상태였기 때문에 귀국할 수 있었다고 하고, 회사에서 1,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국내 연행의 경우도 어떤 보상이나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방이 되자 일을 시키지 않고 연병장에 모이게 하더니 민폐 끼치지 말고 집으로 가라며 보내줬다고 한다. 함북의 아오지탄광에서부터 논산까지 약 40일을 걸어서 왔다. 하루에 십리나 이십리를 걸었는데, 배가 고파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5. 소결

강제연행 가운데 노무동원은 16-22세 정도의 청년들로 1943-45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들은 일본 전역으로 보내졌다. 특히 대규모의 징용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악대까지 동원한 거대한 환송식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 연행될 때는 국민학교나 면사무소에 집결했고 군, 시단위로 올라 갔으며, 열차에 실려 부산, 여수 등지에서 배를 타고 일본의 시모노세키, 하카다 등지에 도착했던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었다.

일본에 간 조선인들은 열차나 트럭 등을 통해 일본 전역에 보내졌는데, 주로 조선인 노동자의 경우 탄광, 건설현장, 군 시설 공사장 등지에 배치되었다. 노무동원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8시까지 노동에 혹사당했다. 현장에서는 일을 못하면 구타당했고, 거의 모든 강제연행자가 구타를 경험했다고 한다. 생활은 주로 기숙사에서 했고, 1개방에 소수일 때는 7~10명이 함께 생활을 했으며, 군사용 가건물, 바라크, 나가야, 함바 등지에서 살아 가야만 했다. 조선인 노동자는 절대 부족한 양의 식사를 했다. 한마디로 말해 식사가 절대 부족하여 배고픔에 허덕였다. 주로 잡곡으로 된 식사를 했고, 식사량이 적어 식사 후에 물을 먹고 배를 채우기도 했다. 임금은 현지에서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봉급은 임금내역만 기재된 빈 봉투를 받았으며,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귀국 시 전액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귀국과 함께 월급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였고, 거의 드문 일이었던 것 같다. 노동현장에서는 회사 관계자들이 무단 이탈을 철저히 막았으나 현실은 저항의 형태로 도주가 계속되었다.

강제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는 엄중한 노무감독과 학대, 민족적 차별을 당했다. 탄광에서는 대부분이 갱내 인부로, 토목공사에서는 기초공사에 동원되었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노동을 담당했던 것이다. 군인·군속으로 일제의 전장수행에 동원된 조선인은 대략 37만명에 달하였다. 초기 징병의 경우 지원병으로 배정되면 영예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논산군 별곡면의 강제연행 실태를 살펴보았다. 모두 7명의 강제연행 조선인을 만날 수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충남 보국대장을 만나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조사대상 지역인 벌곡면의 경우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계속적으로 강제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강제연행된 곳은 쿠슈와 이바라키현 등의 국외지역과 황해도 홍능탄광, 함북 아오지탄광, 함남 단천광산 등의 국내지역이었다.

이들의 노동조건은 그야말로 악조건이었다. 12시간 이상의 노동시간, 상습적인 폭행과 구타, 열악한 작업환경 등 사람으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생활 전반에 있어서도 통제의 연속이었다. 함바의 생활은 심지어 20명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었고, 불도 때지 않았다고 한다. 국내 연행의 경우도 건물이 없이 천막에서 30명 정도가 생활하였다고 하니 그 고난은 짐작할 만하다. 또한 사업장 주위는 온통 담이 쳐져 있어 감옥과 같았다. 먹고 자고 일하고의 연속으로 마치 일하는 기계와 같았다. 강제연행 조선인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배고픔이었다. 질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절대량이 부족했다. 해를 보면 비실비실할 정도였다고 한다. 때문에 얼마되지 않던 월급도 떡이나 술을 사 먹는데 다 써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속에서 강제연행 조선인은 강제연행되는 과정과 사업장 도착 이후에 탈출로써 저항하였다.

<보론1> 창녕군의 강제연행 실태 검토³⁰⁾

1. 연재

창녕군의 강제연행은 인터뷰 기록을 통해 정리하면 1940년부터 45년 사이 전 기간에 걸쳐 전개되었고, 특히 1942, 43년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나이

주로 강제 연행된 사람의 나이는 적게는 15세에서부터 18-22세, 많은 경우는 25-28세의 연행도 있었다. 특히 결혼을 해 연행되어 간 경우도 있어, 가족의 신변의 위협 때문에 도망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3. 방식

일반적으로 대다수는 강제 연행되었으나, 어떤 경우는 국내에서 먹을 것이 없어 스스로 신체검사를 받고 간 경우도 있었다. 모집 소집을 듣고 가기도 했다. 특이하게 기관사로 징용된 경우도 있었다.

4. 형태

강제연행의 형태는 노무동원이 제일 다수였고, 해군 군속으로 끌려간 경우가 상당수이었다. 특히 두 번이나 징용되어 이중으로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다.

5. 일본 내 연행장소

일본에는 주로 시모노세키를 통해 들어 갔고, 일본 전역으로 이동했다. 확인되는 연행하여 간 현장을 보면, 요코스카, 우라가, 나가사키 긴바시 탄광, 가고시마 비행장, 북해도 지시마, 이와테현, 큐슈, 오사카, 사세보, 히로시마, 하카다, 오야마, 오이다 야하다제철소, 오이다 뱃부, 이와테현 모리오카의 유황 탄광, 아오모리 탄광, 나고야, 후지산 밑의 누마즈, 시즈오카, 오카야마 아카무라, 나라, 삿포로 비바이마치 탄광, 나가노현, 가와사키, 마츠모토, 가네가와현 요코스카 조선소 등지이다. 특히 먼리 남양군도에도 보내져 처참하게 생활했던 경우도 있어, 남양군도 야쿠시마, 남양군도인 카토린군도의 트럭도, 닝가카, 사이판 등지에 갔다.

6. 노동의 형태

노동은 주로 8-12시간 노동이 일반적이었다. 아침 6, 7시부터 시작하여 저녁 6, 7시에 일을 마쳤다. 특히 공장에서는 아침 7시와 저녁 7시에 주야 교대를 했다. 탄광의 경우 1개월의 훈련 후 막장에 가서 일을 해야 했고, 오전 4시에 가서 밤 12시에 돌아오기도 했다. 주로 하루 3교대로 작업을 했다. 큐슈의 어느 탄광에서는 조금 젊은 사람은 탄 캐는 일을 시키고, 나이 든 사람은 탄광 안에서 탄과 잡

30) 『채인돌-태평양전쟁중 창녕군에서 강제연행당한 생존자증언집』 (강제연행생존자증언집편집위원회, 2000, 7), 참조.

석을 분류하는 작업을 시켰다. 터널공사장의 경우, 중노동이기 때문에 아침 8시에 들어가 오후 2시경까지 일을 했다. 남양군도의 더운 곳에서는 혼도시만 걸치고 작업을 했다. 옷 1벌로 2년 정도를 입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야간 훈련을 받기도 했다. 또한 잠이 부족하여 탄광의 경우 갱속의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들키면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

7. 식사

식사를 충분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북해도의 경우는 끼니 때 마다 청어가 나오는 현장도 있었으나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허기를 이기지 못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를 채웠는데,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훔쳐먹거나, 감자를 캐 먹었다. 그리고 콩을 볶아 먹다가 배탈이 났고, 물배를 채우기도 했다. 해군에 징병된 어떤 경우는 배를 채우기 위해 들풀을 뜯어 먹었고, 말이 먹다가 남은 강냉이를 건져 모자에 담아 씻어 먹기도 했다. 그리고 들의 미나리도 먹었다.

식사는 대두박에 고구마 두 조각, 대두박과 알랑미를 섞은 밥, 빨간 무를 절인 반찬을 먹었다. 또 보리밥에 가끔 건빵, 미역에 쌀을 조금 넣어 죽을 만들어 돈부리, 미역밥에 감자, 감자에 콩이 범벅인 밥, 고구마 튀김, 깻묵에 콩, 보리밥을 조금씩 섞은 것을 먹었다.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시래기를 주어서 끓여 먹기도 했다. 그리고 소수의 경우 일과 후에 밀감을 사먹거나, 고래고기를 먹었으며, 조선에 연락하여 미숫가루를 보내달라고 하여 먹었다. 여기에 장갑, 양말도 같이 받아 사용했다.

점심때는 도시락을 먹기도 했다. 도시락 두 개를 먹어야 시장기를 면할 정도였다고 한다.

매일 쌀 2홉 반이 지급되었다. 북해도 탄광에서는 6홉이 지급도 되었고, 해방 직전에는 3홉이 지급되었다.

대부분의 현장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 배식이었다. 일부는 월급을 갖고 술과 담배를 사먹는 경우도 있다. 특히 술이 토요일 오후가 되면 지급되기도 했다. 북해도의 경우 날씨가 추위 1주일에 정종이 한 잔씩 나왔던 것이다.

8. 월급

월급은 원칙적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대다수의 경우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다. 따라서 하나도 받지 못해, 고향에 송금을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창녕군의 인터뷰 기록만을 갖고 보면, 한달 월급이 15원, 30원, 40원, 100원, 120원, 140원(공장 노동의 경우 수당을 포함해 280원), 156원(일은 하지 않은 달 105원), 170원, 300원 등이었다. 일급은 5원 50전, 4원, 3원, 2원 20전 등이었다. 특히 3원을 받은 경우 1원 40전을 저금액으로 공제하고, 80전을 받기도 했다.

일부의 경우 월급에서 송금을 하거나 일부를 띠어 간식이나 술을 먹는데 사용했다. 그리고 귀국 시 목돈을 갖고 들어온 경우도 극소수이지만 있었다. 그 돈은 1,000원에서부터 10,000여원 정도였다. 그리고 퇴직 수당으로 2,000원을 받기도 했다.

9. 외출

원칙적으로 출입이 현장에서는 부자유스러웠다.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외출했고, 외출을 못 가게 했다. 외출은 월 2회, 작업반장 책임 아래 가는 경우가 많았다.

외출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가능했고, 시간을 정해 외출했다. 낮에는 수위로부터 표를 받아 출입했고 이를 위반할 때는 심한 매질을 당했다. 어떤 운이 좋은 경우는 뒤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있어 자유롭게 외출이 허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요일은 조선인이 사는 마을에 놀러가기도 했다.

10. 숙소

대부분의 경우 창녕군의 강제 연행된 사람들은 바라크나 바라크식 건물에 다다미를 깔고 담요만 제공받아 지냈다. 바라크식 판자집에 2단 침대를 사용한 예도 있다. 특히 바라크 막사에 가마니를 깔 마루에 지내거나, 운동장 주변에 막사의 형태로 된 곳에서 기거하기도 했다.

독특하게 도주하여 형 집에서 기거하는 예도 있었으나 극소수였다.

11. 저항

대부분의 저항은 직접 제제를 받았고, 일부의 경우 수용된 예도 있다. 특히 식사개선과 같이 일상적인 요구투쟁이 수용된 경우도 있었다. 어느 현장의 경우 식사 개선을 사무실에 건의했으나 여의치 않아 사무실을 부수고 싸우는 사건일 발생하여 경찰서에 관련자가 연행되어 구류를 산 일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자연스럽게 정리했다고 한다. 또한 공장에 항의하여 식당을 부수고 폭력 투쟁을 전개했는데, 고등경찰이 부드럽게 대응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도 극소수이다.

12. 도망친 경우

창녕군 출신의 도망의 경우 성공한 예도 있었다. 일본 내에 친척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들의 경우 성공 확률도 높았다. 일반적으로 잡히면 매질을 당하고 실신하면 물을 끼얹어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다. 공개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의 도망을 원천봉쇄하자고 했으나 도망은 계속되었다. 1주일 고문으로 병신이 된 경우가 있었다. 자체 형무소를 두어 규율 위반자를 처벌했고, 탈출하다 잡힌 경우는 형무소에 가두어 굶겨 주이기도 했다. 특이한 사례로 회사측과의 투쟁 이후 특별한 가혹행위가 사라지기도 했다.

근현대사 인식과 역사변혁

紀州鑛山으로의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사실 추구의 과정에서

김 정 미(紀州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 회장, 재일사학자)

■ 목 차 ■

머리말 근현대사에 있어서의 구술자료

(1) 紀州鑛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구술자료조사의 경험

1. 한국에서

① 강원도 인제, 정선, 평창에서

② 경상북도 안동, 군위에서

2. 일본에서

3. 해남도에서

(2) 구술의 요점

(3) 구술조사를 정리하면서

(4)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경험을 들을 의미

맺음말 앞으로의 과제

머리말 근현대사에 있어서의 구술자료

구술은 사자료의 발굴과 함께 사실파악과 역사인식의 기초다.

특히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구술조사와 '현지조사'는 불가결한 작업이다.

근현대사연구에 있어서는 문서자료를 단편에 이르기까지 탐색하고 수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가능한 한 구술을 듣고 '현지조사' 하는 일도 중요하다. 구술자료와 '현지조사'를 되풀이하면서 구술로 얻은 증언의 진실성을 다른 증언이나 문서자료에 의하여 검증함과 동시에 '현지조사' (현장을 보는 것, 현장에서 증언을 얻는 것, 현장을 탐색하는 것,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를 하는 것이 근현대사연구의 기본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하에서 日本三重縣에 있는 紀州鑛山으로의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필자들이 행한 구술 조사활동에 대해서 보고함과 동시에 중국 해남도로의 조선인 옥중자 강제연행에 대해서도 약간 보고하고자 한다.

(1) 紀州鑛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구술자료조사의 경험

1. 한국에서

紀州鑛山에 조선인이 강제연행되어 있던 것을 가리키는 문서(石原産業紀州鑛山가 작성하여 1946년 9월에 三重縣內務部에 제출)를 저는 1996년 여름에 입수하였다. 그 문서에는 조선인 776명의 성함, 본적지, '입소경로' (9명을 뺀 767명이 '官斡旋' 과 '徵用'. 그 중 282명이 도망) 등이 써여져 있다. 1996년 10월에서 부터 1999년 8월까지 우리는 그 분들의 본적지를 찾아 갔다.

① 강원도 인제, 정선, 평창에서

강원도는 조선전쟁 때 격전지였다. 그것으로 인하여 호적부는 거의 소실되었고 전쟁이후에 새로 만들어 진 것이 많다고 한다.

② 경상북도 안동, 군위에서

우리는 紀州鑛山에 강제연행된 사람들의 고향을 찾아 갔는데 거기서 일본, 중국동북부, 태평양의 여러 지역에 강제연행된 사람들을 만났다.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서는 紀州鑛山에 강제연행된 金興龍씨, 丁榮鉦씨, 孫玉鉉씨, 金石煥씨 뿐만 아니라 池野炭鑛(일본 長崎)에 강제연행된 林景燮씨와 金泰日씨, 三井造船玉野造船所(일본 岡山)에 강제연행된 梁承羽씨도 제 체험을 증언해 주셨다. 그 이외에도 아이누모 시리등 각 지역에 연행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식민지시대에 병사계를 하고 있던 사람도 만났다. 일본으로 '징용' 되어 가는 사람을 연행하러 갔다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각 면에 할당된 인원을 노무계가 명단을 봐서 선출한다. 군이나 경찰에서 할당해 온 것 같았다. 그리고 전 직원이 분단하여 연행하러 갔다. 지명된 사람은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영장없이 연행하러 간 일도 있었다”.

이 증언은 군이나 경찰이 강제연행에 관여하여 조선로무협회가 강제연행자의 인원수를 각 군에 할당하여 군장을 비롯한 군 직원이 호적에서 선택·결정하고 연행에는 병사계가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紀州鑛山에는 조선 여러지역에서 강제연행된 조선인이 와 있었는데 우리가 찾아 갔던 그 조선의 어느 지역에서도 紀州鑛山뿐만 아니라 일본 각지와 아시아태평양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연행되어 갔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 행해 진 구술조사는 그 때 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계속해 온 사람들의 공동작업으로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6년 10월과 동년 12월의 한국에서의

조사 후 1997년 2월에 '紀州鑛山の 진실을 밝히는 회'가 일본에서 만들어 지면서 더 紀州鑛山에서의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한 조사활동이 진행되었다.

2. 일본에서

일본에서는 많은 경우 조선인이나 중국인에 대한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실태는 숨겨져 왔다. 일본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원자료는 일부는 공개되었지만 공개되지 않는 것도 많다.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사업주였던 일본기업이 당시 만든 원자료중에서 일부는 도서관이 갖고 있어서 공개된 것도 있지만 일본기업이 스스로 공개하는 일은 없다. 일본인 가해자가 솔직히 증언하는 일도 드물다. 일본 어떤 지역에서 강제연행·강제노동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문서자료가 없을 경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첫번째로 인근 주민의 증언이다. 두번째로는 町役場, 市役所 등의 말단 행정 집행기관이 소장하는 埋火葬許認可願綴이다. 세번째로는 사찰이 소장하는 過去帳이다.

3. 해남도에서

1939년 2월에 일본 육해군이 기습공격을 하여 중국 해남도를 점령하고 군정을 시행하였다. 그 6개월 후 8월에 紀州鑛山을 경영하던 石原 (이시하라) 산업은 해남도 남부(현 三亞시 교외)의 田獨광산을 독점하여 이듬 해 7월부터 철광석을 일본의 八幡(야하타)제철소로 보내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무렵부터 石原산업은 조선인을 紀州鑛山에서 일을 시키고 있었다. 田獨광산에서는 해남도 민중뿐만 아니라 上海, 廣州, 厦門, 汕頭 등의 중국 본토와 香港, 臺灣, 朝鮮에서 부터 연행된 사람들이 흑사당하였다.

田獨광산은 三亞시 동방 교외에 있는데 三亞시 북방 교외에 '조선촌'이란 이름의 黎族 마을이 있다. 거기서 일본군에 의하여 살해되고 문헌 조선인을 한탄하여 黎族주민이 이름지었다고 한다. 해남도에서 발행된 지역사인 政協三亞市委員會編『三亞文史』第4輯(1992년12월),海南省政協文史資料委員會編『海南文史資料』第6輯(1993년1월),海南省政協文史資料委員會編『鐵蹄下的腥風血雨——日軍侵瓊暴行實錄』下(1995년8월)에 의하면 거기서 살해된 조선인은 1000명이상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1998년 6월~7월, 2000년 3월~4월, 2001년1월의 세번에 걸쳐서 해남도에서 조사다녔고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에서 증언자를 찾아 다님과 더불어 한국의 정부기록 보존소나 일본의 방위청 도서관, 외교자료관에서 문서자료를 찾았다. 그리고 거기서 학살된 조선인은 일본 식민지하 조선의 형무소에서부터 '조선보국대'로서 연행된 옥중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방위청 도서관에서 '조선촌' 학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생각되는 군인 이름이나 그 상관의 이름(海南 海軍第16警備隊 司令 能美實)을 발견하였다. 또한 구 일본 해군 전우회 명단에서 '조선촌' 학살의 사실을 아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도 찾아 냈다. 그 이외에 우리는 일본 矯正도서관에서 '조선보국대'에 직접 관여하였던 藤間忠顯, 諸岡龜吉등 일본인 행형관료 이름도 찾아 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었으며 아직 살아 남은 자들은 우리의 면회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가 군인으로서 '조선촌'에서 무엇을 하였는가를 숨기고 있다. 우리는 '조선촌' 학살에 직접 관여한 일본인가운데 한 사람도 증언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선촌' 학살을 실행한 원 일본인 군인들은 일본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와서 가족에게도 사실을 숨

긴 채 살았다. 조선인 옥중자를 해남도로 강제연행한 일본인 행형관계자도 침묵해 왔다.

'조선촌'에 있어서의 조선인 학살이 밝혀진 것은 인근 주민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근현대사에 있어서 일본인은 아시아태평양 각지에서 해남도 '조선촌'이나 田獨광산에서 저지른 일과 동질한 행위를 하였다. 그 모든 범죄가 밝혀져야 한다.

(2) 구술의 요점

1. 구술조사의 요점

- ① '징용 통지'는 언제 어디에서 왔는가. 그 발행자는 누구였는가. 누가 그 '통지'를 배달하였는가.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통지'를 받아서 출발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었는가. 그 간 무엇을 하였는가.
- ② 고향에서 부터 紀州鑛山까지는 어디를 거쳐서 갔는가. 누가 어떻게 '연행'하였는가.
- ③ 紀州鑛山에서 한 일은? 노동조건은? 임금은 받았는가. 받았다면 얼마였는가. 무엇에 썼는가. 고향으로 송금할 수 있었는가.
- ④ 숙소의 장소, 명칭, 규모, 상태, 환경? 같은 숙소에 몇명이 있었는가.
- ⑤ '노무계'의 태도는 어떠한가. 숙소나 노동현장에서의 구급도는? 외출할 수 있었는가. 휴일은 있었는가. 휴일에는 무엇을 하였는가. 고향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었는가. 고향으로 부터 편지를 받았는가.
- ⑥ 탄 지역에서 '연행'된 동포하고는 자유로이 접촉할 수 있었는가. 조선인은 몇명쯤 있었는가. 板屋(이마야)의 八紘寮투쟁(1944년 7월)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 영국인 포로하고 만난 적이 있는가. 일본인노동자와의 관계는? 지역의 일본인과 접촉할 수 있었는가.
- ⑦ 사고를 경험하였는가. 사망자는? 부상자는? '도망자'는 있었는가. 잡힌 '도망자'는 있었는가. '도망'을 생각한 적이 있었는가.
- ⑧ 조선해방은 언제 어떻게 알았는가. 그 때 생각났던 일은?
- ⑨ 조선해방 후의 일본인의 태도는? 귀국할 때까지 무엇을 하였는가.
- ⑩ 언제 紀州鑛山을 떠났는가. 귀국할 때 임금, 귀국수당, 귀국비용(여비, 식비)등등을 받았는가.
- ⑪ 귀국의 도정·상황은?
- ⑫ 고향에 돌아와서 처음에 무엇을 하였는가.
- ⑬ 紀州鑛山에 대하여 잊어지지 않는 일은 어떤 것인가.
- ⑭ 현재 石原産業·일본정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⑮ 해방후 한국정부에서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하여 무엇이든 해 준 일이 있었는가.

2. 가족에게서 들은 구술의 요점

- ① '연행통지'가 온 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누가 아버지 혹은 남편을 직접 '연행'하였는가.

‘통지’가 와서 무엇을 하였는가.

- ② 아버지 혹은 남편이 강제연행·강제노동으로 집에 없는 동안은 어떻게 생활하였는가.
- ③ 아버지 혹은 남편이 귀국하였을 때의 일은?
- ④ 현재 石原産業·일본정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⑤ 해방후 한국정부에서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하여 무엇이든 해 준 일이 있었는가.

(3) 구술조사를 정리하면서

- ① 강제연행의 ‘강제’의 형태는 물리적인 폭력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것이었다. 강제연행에 저항하기 어려운 사회조건이 있었다. 어떤 마을에서는 폭력적으로 강제연행이 실행되었지만 인제군에서는 사회적 폭력. 그 폭력의 직접적인 행사자는 당시의 군장. 조선노무협회가 강제연행자의 인수를 각 군에 할당함 → 군장이 중심이 되어서 호적에서 선택·결정. 당시 유력자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② 강제연행된 남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처자, 부모, 조부모도 고된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향에 남겨진 가족의 생활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사회공동체에 의해서는 지탱되기 어려웠던 것 같았다.
일본인의 銃後! 고향사람의 강제연행후!
- ③ 여러 단계의 강제연행의 실태를 조사하고 강제연행을 가능케 한 사회구조의 분석도 해야 한다.
- ④ 그것을 위하여 강제연행에 가담한 일본인과 조선인(군장,기업의 노무계등등)의 구술조사도 해야 한다.
- ⑤ 기억에 의한 증언의 정확함을 검증해야 한다. 복수 증언자의 증언이 엇갈릴 경우 특히 검증이 필요하다.
- ⑥ 아시아태평양 전쟁 패전 후 60년 가까이 일본정부,일본인 역사연구자는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역사를 어떻게 총괄해 왔는가.
- ⑦ 조선해방 후 60년 가까이 남북조선의 정부,역사연구자는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역사를 어떻게 분석해 왔는가.

(4) 강제연행·강제노동의 경험을 들을 의미

인제에서도 정선에서도 평창에서도 그리고 안동,군위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서 무엇을 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가 만난 전원이 제 강제연행의 체험을 50수년만에 처음으로 말한다고 하였다. 해남도에서도 우리는 질문을 받았다.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서 무엇을 하느냐고.

강제연행되고 강제노동에 시달린 사람들. 남겨진 가족. 그 한 분 한 분한테서 증언을 들을 때 들

은 사람에게서는 들은 책임이 생긴다. 증언을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구술조사를 하는 것인가. 그 물음에 대답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서는 증언자에게 다시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다.

구술자료를 얻는 것은 즉 역사의 목격자에게서 증언을 얻는 것은 자기가 왜 역사를 배우는가, 역사를 배워서 어떻게 하느냐는 자기에 대한 물음에 이어 지고 있다.

맺음말 앞으로의 과제

- 1. 사실 해명
- 2. 책임 추구
- 3. 일본 침략사를 밝히기 위한 민중의 넷 워크 형성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에 있어서의 일본정부·군·기업에 의한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총체적 해명을 전망하면서 紀州鑛山·田獨鑛山·石碓鑛山の 개발·경영의 분석을 행함으로서 식민지·침략지의 개발은 침략의 수단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보다 선명해 진다.

강제연행·강제노동의 희생자에게서 구술을 듣고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실태를 밝히는 것은 국민 국가 일본이 타지역·타국에서 노동력과 자원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빼앗아 일본국내의 경제기초구조를 건설·정비하여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제 국가의 자주적 발전을 방해하였다는 역사적 범죄를 애매하게 하는 일본 내셔널리스트의 역사적 해석을 무너뜨린다.

우리는 증언자를 찾아 다니면서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증언자이외에도 많은 사람들과 만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강제연행된 사람들의 고향에서 마을 사람을 비롯하여 군청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은 자기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강제연행된 사람들의 행방을 같이 찾아 주었다. 우리의 작업은 그들과의 공동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며 여기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참고자료

- ※金靜美「三重현木本における朝鮮人襲撃・虐殺について(1926年1月)」`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編『在日朝鮮人史研究』18号`아시아問題?硏所`1988年`。
- ※紀州鑛山の眞實を明らかにする會 紀州鑛山への朝鮮人強制連行`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編『在日朝鮮人史研究』27号`아시아問題硏究所`1997年`。
- ※金靜美「侵略の共同体と抵抗の共同体——故郷と他郷のかなたに——」`『ほるもん文化』8`新幹社`1998年`。
- ※「海南島 1998年夏——田獨万人坑·石碓万人坑·八所万人坑?朝鮮村——」`『パトロ-ネ』35号`?眞の會パトロ-ネ`1998年10月`。
- ※佐藤正人「日本の海南島侵略と強制連行·強制労働」`第9回朝鮮人·中國人 強制連行·強制労働を考

える交流集會發行委員會編刊『報告集』1999年4月。

※金靜美「日本占領下の海南島における強制労働——強制連行・強制労働の歴史の總體的把握のために——」①・②、「戦争責任研究」27・28「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2000年3月・6月。これは「朴慶植先生追悼論文集『近現代韓日關係와 在日同胞』(ソウル大學校出版部 1999年8月)に掲載された「일본점령하 중국 海南島에서의 강제노동」の日本語譯である。

※金靜美「日帝期の強制連行問題에 관하여」、「各國의 歴史教科書에 비친 過去清算問題」國際教科書研究所 2000年5月。第9次國際歷史教科書學術會議에서의 報告。

※紀州鑛山の眞實を明らかにする會(金靜美・佐藤正人・齋藤日出治)「海南島 2000年春——朝鮮村・后石村・大坡村・羊角嶺水晶光山——」、「パトロネ」42号 2000年7月。

※齋藤日出治「海南島での聞き取り調査」三重현木本で虐殺された朝鮮人労働者(李基允氏・裴相度氏)の追悼碑を建立する會「會報」32号 2000年10月。

※金靜美「海南島・「朝鮮村」で 2001年1月」、「會報」三重현木本で虐殺された朝鮮人労働者(李基允氏・裴相度氏)の追悼碑を建立する會 33号 2001年3月。

※金靜美「國民國家日本の他地域・他國における暴力——海南島の場合——」、「洪鍾?先生退任記念論文集」白山出版社 2001年12月。

일본제철보상재판과 구술자료

김은식(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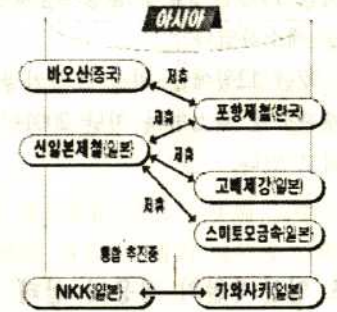
일본제철(이하 일철)은 일제강점기 약 1만여명의 조선인 징용자들을 강제연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이하 신일철)은 세계 최강의 철강회사로 한국의 포항제철과는 제휴관계를 두고 있기도 하다.³¹⁾

신일철을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95년 9월 11명의 유족이 동경지방법 재판소에 제소하면서 시작되었고, 97년 12월에는 생존자 2명이 오사카지방법 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유족 11명의 소송에 대하여 신일본제철측은 지난 97년에 1인당 2백만엔의 화해금과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생존자 2명에 대해서는 화해를 위한 교섭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일본제철 징용자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지난 9월부터 시작하여 3차례에 걸친 한일공동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서로 손잡는 세계 철강업체들



2. 일본제철징용자소송의 배경

고마자와대학의 고쇼 타다시 교수(古庄 正)에 의해 태평양전쟁중 일본제철주식회사에 징용되었던 징용자들의 미불임금을 공탁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일본기업의 조선인 고용의 실태, 임금의 착취 과정, 징용사망자에 대한 처리등에 대하여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이 자료는 일본제철주식회사 총무부 근로과의 「조선인 노동자 관계」라고 하는 자료이며, 1974년에 고서점 앞에 있던 일본제철 경영자료 176권과 함께 구입된 것이다. 이 자료로 인하여 일본제철이 강제연행한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미불금 공탁보고서와, 미불금이 공탁된 경위를 알 수 있는 후생성의 통달, 일본 제철 각 사업소 앞으로 보내진 본사의 진령등이 수록되어 있는 귀중한 자료였다.³²⁾

1991년 6월 10일자 아사히신문에 "강제연행조사단"에서 제공한 기사에서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동자

31) 중앙일보 2001년 12월 17일, 33면, 「세계 철강국 불황 타개 위해 생존 몸부림」

32) 山田昭次・田中 宏 編著, 1996, 「隣國からの告發」, 70쪽

의 임금이 일본은행에 공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일본제철 근무자 임금을 평균으로 조선인 강제연행자 수의 미불임금이 약 5,000만엔이 공탁되어 있다고 추정하였고, 5,800배 통화가치 상승에 따라 환산하면 2,900억엔에 이른다고 전망하였다.

주일미군 Memo for M/F file 091(1949년)에 의하면 조선인 미불임금 액수를 2억3,700만엔으로 보았으며, 이를 5,800배로 환산하면 약 1조 3,746억엔에 이르는 어마 어마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쇼 타다시 교수는 공탁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중에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근무중 사망한 사람들에 대하여 각 본적지로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이의 통지를 받은 몇몇 유족들이 비로소 부친의 생사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실로 유족들이 전후 반세기라는 시간을 보내고서야 비로소 부친의 생사를 알게된 순간이었다.

이들 유족들은 가족의 사망사실조차 통지하지 않은데 대하여 일본정부와 신일철을 공동의 피고로 지난 1995년 9월에 동경지방법원에 제소하였으며, 2000년 1월에는 공탁금반환을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소하였다.

97년 12월에는 일철 오사카공장에서 근무한 생존자 2명이 일본정부와 신일철을 상대로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하여 지난 2001년 3월에 기각판결이 내려졌고 2001년 1월에 진행될 항소심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3. 일본제철의 징용자 실태

1) 일본제철의 강제연행 실태

군수회사에 대한 강제연행은 중일전쟁후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개되어 갔다. 강제연행이 본격화 한 것은 역시,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이 각의에서 결정된 1942년 2월 이후의 일이었다. 1942년 2월 20일자 「경성일보 - 현 서울신문」에 의하면, 철강통제회는 각의결정 후 조선지부를 설립, 내지(일본본토)제철회사로 보내는 조선인 노동자의 동원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와 절충을 거듭한 결과, 동년도에는 2500명을 야하다(八幡)제철소·일본강관 등 3개 주요 제철소로 보내어, 기술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후 매년 3000명을 송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연행의 대상이 된 것은 17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국민학교 졸업 이상으로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계약기간은 2년간으로 되었다. 조선인에 대한 징용령이 적용되게 되는 것은 1944년 10월부터이나, 군수회사에 있어서는 「관알선」이란 이름 아래 사실상 징용령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³³⁾

일본제철징용자의 특징은 모집, 관알선, 징용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갖고 있다.

야하다제철소에서 근무한 김규수씨(25년생, 서울 거주)는 17세때 재판소에서 대리로 일하던 중 징용영장을 받고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오사카제철소에서 근무한 여운택씨(23년생, 서울 거주)는 평양에

서 모집광고를 보고 입사신청을 하였다.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근무한 이춘식씨(24년생, 광주거주)는 17세때 대전시장의 요청에 의해 가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공통적인 특징은 일본제철에서 훈련생으로 근무한 후에는 기술자 대우를 해 주겠다는 등 여러 가지 호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2) 강제노동의 현황

일철 야하다제철소에 보일러공으로 일했던 김무래씨는 주야 2교대제 12시간노동으로 1주일마다 주야근무를 교대하였다고 증언하였다.³⁴⁾

일철 오사카제철소에서 근무한 징용자 가운데서도 근무시간의 차이는 있었다. 변호상(충북 거주)씨의 경우 1기생으로 오사카제철소로 모집되어 갔으나, 현장에서 징용영장을 받게 되었으며, 하루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기생인 여운택씨의 경우 하루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운택씨가 특수크레인을 조작했기 때문에 집중력을 요하는 직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⁵⁾

평소 외출은 금지되었으나 간혹 외출을 보내줄 경우 단체로 감시하에 이동하도록 했다. 징용자들은 외출해서 죽을 사먹거나 영화구경을 하는 경우가 주로 많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도주를 하게 될 경우 혹독한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오사카제철소에서 근무한 신천수(26년생, 서울 거주)씨는 징병영장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도주를 결심하다가 발각되어 모진 구타에 시달려야 했다. 김규수씨의 경우 17세의 어린나이였기 때문에 가족이 그리워 도주하다가 붙들려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3) 미불금의 공탁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근무한 이춘식씨는 일체의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저금한 내역도 잘 모르고 있었다. 이춘식씨는 41년도에 입사하여, 징병연령이 되어 1년 반가량 근무하다 45년 해방후에 일철에 재입사하여 1년간 근무를 더 하였다. 그러나 그의 공탁금액은 23.8엔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기록상 사고귀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사고도 있지 않았다. 오사카제철소 근무자 역시 생각했던 것 보다는 낮은 금액이 공탁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하다제철소의 근무자는 적지 않은 임금을 받았으며, 휴가때 소를 사서 귀향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전북 임실 유재호씨 진술) 그러나 야하다제철소에서 근무한 김무래씨의 경우 「월수 25엔 중 7.8엔이 지급되었을 뿐 잔액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일철 알려주지 않았다. 저금통장 같은 것은 본격도 없고, 돈의 행방을 묻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무기간과 공탁금액간의 불일치, 논리적인 모순점도 많았으며, 같은 작업장내에서 작업환경, 임금수준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고 보여진다. 근무기간대비 공탁금을 별도의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34) 古庄 正 編著, 1993 「強制連行の企業責任」, 創史社, 24쪽

35) 앞의 책

33) 古庄 正 編著, 1993 「強制連行の企業責任」, 創史社, 12쪽

근무 기간이 길면 공탁금액 또한 많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의 그래프는 그렇지 않았다. 근무 기간이 적어도 공탁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었으며, 근무기간이 길어도 공탁금이 매우 적은 경우도 많았다.

4) 미불금의 공탁과정

일본 패전후 강제연행당한 한국인 노동자들은 재일본 조선인 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지원을 얻어서 일본 전국 각지의 광산·탄광·토목공사 현장·공장에서 해방과 더불어 보상을 요구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을 긴장시켰다. 그런데 이 중 한국인 노동자 운동에서 보상요구·미불금 반환 요구에 대해 큰 역할을 한 연맹 이와태현 본부의 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경찰력의 집중배치·구속 단속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연맹 이와태현 본부는 일본제철 가마이시(釜石) 제철소 기타 7개 사업장을 상대로 보상 요구와 미불금금 위탁 요구를 지속했다. 연맹 이와태현 본부장 이하 4명이 가마이시 제철소를 방문하여 사망자·도망자 등의 미불금금·저금·적립금등의 미불금과 후생연금의 지불을 연맹에게 위탁하라고 요구한 것은 1945년 11월 10일이었다. 1946년 3월 25일에 연맹 간부들이 다시 가마이시제철소를 방문하여 전시중에서의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혹사 사실을 강하게 비난하는 동시에 새로이 요구사항을 문서로 제출하였다.

- a. 입소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의 제공
 - b. 위자료의 지급과 사상자에의 특별 위자료의 가산
 - c. 사망자·행방불명자·귀국자에 대한 미불금의 연맹 중앙본부에의 위탁
- 이 3개 항목을 골자로 삼은 이 요구에 대해 가마이시제철소는 결국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제철 본사의 의향에 따른 것이다. 연맹은 이 결과에 분노하였다.

46년 6월 7일 이와태현 내무부장이 조정안을 제철소 측에 제시했다. 이 조정안의 내용은

- a. 업무상 사망자에 대해서는 5000엔, 업무외 사망자 및 업무상 중도 부상자에 대해서는 2000엔, 업무상 부상자에는 1500엔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 b. 연맹 사무비로 노동자 한명당 50엔을 지급한다.
- c. 위자료는 받을 사람이 나올때까지 이와태현 후생과가 보관한다.

는 내용이었다. 조정안에 의하면 가마이시제철소의 보상액수는 총액 19만 3,150엔이 되었다. 가마이시 제철소장은 현의 목적이 연맹의 폭행 위협을 미리 방지하는 동시에 연맹의 방대한 요구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에 있다고 해서 조정안 수락 허가를 본사에 요구하게 된다. 기타 7개 사업소도 본사에 대해 똑같은 청구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태현의 조정안의 성립은 정부와 자본가 단체·관계기업의 동경본사 등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국적에 의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한 GHQ의 대일 직업정책을 연행 한국인의 보상요구 말살책으로서 이용하면서 이것에 대한 저항은 경찰력의 집중배치·구속 단속의 강화에 의해 역누를 전망이 실패가 되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모리오카(盛岡) 진주군 사령부의 뒷받침 때문에 이와태현 내무부장의 책임으로 고액지불 회답이 나왔기 때문이다. GHQ의 대일 직업정책을 거꾸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던 후생성의 한국인 노동자 대책의 약점은 "부당요구"를 단속할 때, 도대체 뭐가 부당한지 그 기준이 불분명한 일이었다. 「조선인·대만인 및 중국인의 급여 등에 관한 안건」이라는 6월 21일자 차관통첩은

이것을 보충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통첩은,

- a. 급여에 대해 GHQ의 각서가 공포된 1945년 11월 28일까지, 수당에 대해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45년 9월 2일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
- b. 바꾸어 말하면 임금에 관해서는 45년 11월 27일 이전에, 퇴직금에 관해서는 45년 9월 1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그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 뿐더러 부당한 것이고,
- c. 연맹은 재일 한국인의 보호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 임금에 대한 교섭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

의 3개 항목을 그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건강부회였지만 연맹의 보상요구나 미불금 위탁 요구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연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상당액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연맹과 약속한 이와태현 내무부장은 이 결과 후생성과 자본가 단체 및 관계기업 동경본사에게서 집중 포화를 맞게 되었다. 일본제철 본사는 가마이시제철소에게 이와태현 조정안 거부를 지령하고, 다른 기업들도 이것을 따라갔다. 이와태현 내무부장은 통첩 취지에 따라 46년 9월 조정안의 백지화를 연맹에게 통고한 한편,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연맹에 대한 기부 문제를 거론했다. 이것에 대해 업자들이 협의한 결과, 연맹 사무비로서 종전 귀국송환 인원 한명당 10엔을 일단 산정기준으로 해서 1000엔 미만인 경우는 1000엔, 최고 5000엔을 넘지 않음으로 합의되어 본사에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일본 제철을 비롯한 동경본사에서 후생·내무 양성과 전국 광산회나 석탄광업회의 의향을 물어본 후 "사무비 명목의 기부금은 절대 거절할 것"을 결정, 이 취지를 관계 각 사업장에게 사령했다.

그 목적은 "본건은 비단 본건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국에 파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다. 연맹의 요구를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한 동경 본사는 그 반면 연맹의 보상 요구액을 실제로 지불한 것으로 "관리비"의 명목으로 많은 자금을 국고에서 끌어냈다. 일본제철 본사가 받은 "관리비"는 총액 5000만엔에 달했다. 연맹의 보상 요구와 사망자·도망자 등에 대한 미불금 위탁 요구를 차관 통첩으로 치워 버린 일본 정부는 한편 공탁제도를 설치하고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미불금의 공탁을 의무화했다. 후생성이 "조선인 노무자들에 대한 미불금 기타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내면서 미불금의 공탁을 지방 장관에게 지시한 것은 46년 10월 12일이었다.

이 통첩에 의해서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임금, 퇴직금, 적립금, 저금, 유가증권 등의 미불금을 채무 이행할 지방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동시에 공탁 완료시에는 공탁서의 번호, 공탁년월일, 공탁소명, 받을 사람의 이름, 본적지, 고용 및 해고의 사유, 미불금의 내력 등을 적어둔 보고서 3부를 지방 장관(지사)에 제출함을 의무로 이행했다.

한편 지방 장관은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앞의 보고서를 보이게 하고 당해 관계자들에게서 보고서의 기재 사항에 관해서 이의 신고가 있으면 실정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미불금의 공정화를 기할 것으로 되어 있었다. 개개의 관계 기업의 공탁 시기는 다르지만 일본 제철 주식회사의 경우, 가마이시 제철소가 1946년 12월, 야하타(八幡)제철소가 47년 1월, 오사카(大阪) 제철소가 47년 4월에 각각 공탁을 마친 것으로 보아 공탁은 1946년말에서 1947년 상반기에 걸쳐서 행해진 것으로 추측된

다.

일본정부는 미불금의 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인 한국인 노동자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탁후 10년이 경과했을 때 채권자에게서 환부 요구가 없었다고 해서 공탁금을 일방적으로 시효 소멸시켰다. 36)

4. 일본제철 징용자 재판

1) 일본정부의 주장

- 직접 피해를 입은 개인에 있어서 당해국가에 책임을 물을 권리는 피해자 개인과 그 관계자에는 없고, 피해를 받은 개인이 소속된 국가에 있고, 외교보호권을 행사함에 의해 피해자 등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 국제인도법위반행위를 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가 헤이그 육전조약의 위반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 국제인권규약 B규약은 昭和 51년 3월 23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昭和 54년 9월 21일에 효력이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조약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조약의 효력이 당사국에 대해서 발생하는 날 이전에 행해진 행위 또는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빈 조약법조약 28조 참조)

- 「인도에 대한 죄」는 뉴렌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 조례6조 및 극동군사재판소 조례 5조에 의해 규정된 전쟁범죄이고, 제2차세계대전에 관련하여 행해진 비인도적행위·박해행위를 행한 행위자 개인의 형사책임을 명확히하고,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조항이다. 따라서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 위반자가 속한 국가의 민사책임을 기초로하여 당해국가의 배상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동경지재 平成 7년 7월 27일 판결 및 동경고재 平成 8년 8월 7일 판결)

2) 신일철측의 주장 : 별개회사론

- 원고들은, 소장 청구의 원인 「제1 서문」 제2항에 있어서, 피고회사가 일본제철주식회사(이하 「일본제철」로 한다)의 「후신」이라고 기술하나 그 법률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그 정확한 의미 내용(일본제철과 피고회사의 관계)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한다.

- 또한 일본제철이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의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피고회사는 이를 승인할 수 없다. 일본제철은 昭和25년4월1일을 기해 해산하였다.

3) 판결문

- 원고들이 제2차대전중에 일본제철주식회사의 노무자 모집에 응모하여 평양에서 일본제철의 오사카제철소로 보내진 것에 대하여 강제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강제연행이었다고 볼 수 없으나

36) <http://victim.peacenet.or.kr/osakaj/osakaj24.htm>, 「연행 한국인 마블금 공탁 문제」

원고들의 오사카제철소 및 매치 후 청진에서의 취로상황은 실질적으로 볼 때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본제철의 원고들에 대한 미불임금지불채무 및 강제노동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초해 손해배상채무는 회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해 재건정리의 결과, 새로 설립된 야하다제철주식회사, 후지제철주식회사에는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사의 합병에 의해 탄생한 피고 신일철에 대한 원고들의 미불임금청구,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에 관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

- 원고들이 직접 국제법 및 국제관습법에 기초하여 강제연행, 강제노동을 이유로 해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

- 강제연행, 강제노동을 이유로 하는 피고국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리,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조리등에 기초한 청구는 소위 이유가 없다.

- 일본제철이 전후, 미불임금등에 대하여 공탁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5. 결론

기록은 문서를 생성한 주체의 의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본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사실을 기록할 수 있다. 일본제철의 공탁보고서는 조선인 강제연행의 실태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로 제기되었으나, 실제의 인터뷰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많았다. 이춘식씨의 경우 소화18년 1월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은 소화 16년부터 입사를 이미 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소화20년 12월 27일 사고로 귀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본인은 소화 21년 가을에 귀국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체의 급여조차 받지 못한 채 귀국하였다 하였으나 공탁기록에는 예저금으로 23.80엔이 공탁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김순동씨(사망, 충남 거주)의 경우는 소화18년 10월 19일 고용되어 소화18년 9월 5일 해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다.

일본제철 공탁명부는 일본제철에서 근무한 징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서만이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최근 화해를 추진한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은 기금의 수급권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각종 기록 조사, 생존자에 대한 인터뷰에 전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들과 화해가 성립된 카지마 건설 역시 기금의 수급권자를 선별하기 위한 작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해결의 대상은 이제 우리의 징용피해자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피해자의 증언을 채록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며, 법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표1 일본제철주식회사 공탁금액

출전 : 일본제철주식회사

제철소·공장명	종류	사망자	비사망자	공탁금합계액
		円	円	円
가마이시제철소 (釜石製鐵所)	유족부조료	7,608.75		7,608.75
	조위금	16,350.00		16,350.00
	조위금보험금	37,500.00		37,500.00
	퇴직수당금	2,209.76		2,209.76
	공임상여	3,949.55	5,065.24	9,014.79
	기간연장수당	2,530.82		2,530.82
	퇴직적립금	120.97	1,336.82	1,457.79
	징용보급금	433.28	1,714.30	2,147.58
	예저금	3,686.10	37,505.63	41,191.73
	건강보험이장료	2,440.00		2,440.00
	제3자조위금	1,293.20		1,293.20
	遺留현금	336.26		336.26
	전쟁보험금		1,751.03	1,751.03
	소 계		78,458.69	47,373.02
오사카공장 (大阪工場)	일시금	1,880.00		1,880.00
	조위금	2,500.00		2,500.00
	퇴직금	120.98		120.98
	예금		5,676.16	5,676.16
	급료	166.00	8,923.10	9,089.10
	제수당		4,332.15	4,332.15
	기타		73.00	73.00
소 계		4,666.98	19,004.41	23,671.39
야하다제철소 (八幡製鐵所)	조위금	1,301.11		1,301.11
	퇴직수당금		88,599.98	88,599.98
	임금(급료)		74,003.44	74,003.44
	예금		104,276.48	104,276.48
소 계		1,301.11	266,879.90	268,181.01
합 계		84,426.78	333,257.33	417,684.11

가마이시제철소 「사물조선출신노무자미급여금예저금등명세서」, 동 「조선출신노무자미급여예저금등명세서」, 동 「조선출신노무자에대한퇴직적립금증권등미처리분명세서」, 일본제철주식회사 오사카사무소 오사카공장 「조선출신노무자에대한미불금공탁보고서」, 일본제철주식회사 야하다제철소 「조선출신노무자미급여금예저금등명세서」 등에 의거 작성

표2 일본제철주식회사 해고사유별 공탁금액

제철소·공장명	해고사유	공탁금합계액	인원수	1명당 금액
		円	円	円
가마이시제철소 (釜石製鐵所)	전재사	55,945.06	21	2,664.05
	업무상전재사	17,970.53	4	4,492.63
	공상사	4,510.17	5	902.03
	사병사	32.93	2	16.46
	도망	23,139.61	366	63.22
	사고귀국	17,554.26	188	93.37
	종전귀국	3,912.90	44	88.92
	계약만료귀국	845.33	35	40.89
	입대귀국	1,002.86	11	91.16
	병으로 귀국	918.06	14	65.57
소 계		125,831.71	690	182.36
오사카공장 (大阪工場)	도망	1.00	1	1.00
	만기	121.74	27	4.50
	청진이동	18,776.07	163	115.19
	가사사정귀국	105.60	4	26.40
	사망	4,666.98	2	2,333.49
소 계		23,671.39	197	120.15
야하다제철소 (八幡製鐵所)	정리해고	268,181.01	3,042	88.15
소 계		268,181.01	3,042	88.15
합 계		417,684.11	3,929	106.30

출전 : 표1과 같음